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01호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	례 제 1 6 4 7 호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3
○ 조	례 제 1 6 4 8 호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11
○ 조	례 제 1 6 4 9 호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조	례 제 1 6 5 0 호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9
○ 조	례 제 1 6 5 1 호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	27
○ 조	례 제 1 6 5 2 호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공 고

○ 공	고 제 1 9 1 8 호 「고잔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40
○ 공	고 제 1 9 2 5 호 남동구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판매장 입점제품 반출 (회수) 공시송달 공고	41
○ 공	고 제 1 9 2 9 호 2019년 11월 취득세 공시송달	44
○ 공	고 제 1 9 3 1 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46
○ 공	고 제 1 9 3 2 호 남동구 만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채용 공고	57
○ 공	고 제 1 9 3 3 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65
○ 공	고 제 1 9 3 5 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다북마을구역]	68
○ 공	고 제 1 9 3 6 호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시송달 공고(정정)	73
○ 공	고 제 1 9 4 3 호 남동구 청소년시설 시설장 채용 공고	77
○ 공	고 제 1 9 4 4 호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77
○ 공	고 제 1 9 4 7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79
○ 공	고 제 1 9 4 8 호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에 따른 설치 대상자 선정 공고	83
○ 공	고 제 1 9 4 9 호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에 따른 설치대상자 선정 공고	105
○ 의회사무국공고 제 1 2 0 호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49
○ 보 건 소 공 고 제 8 2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63
○ 보 건 소 공 고 제 8 3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64
○ 보 건 소 공 고 제 8 4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66

고 시

○ 고	시 제 1 4 8 호 사방지 지정 고시	 167
○ 고	시 제 1 5 2 호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정정)	 173
○ 고	시 제 1 5 4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 소래어시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209
○ 고	시 제 1 5 6 호 간석자유시장주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210
○ 고	시 제 1 5 7 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215
○ 고	시 제 1 5 8 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220
○ 고	시 제 1 5 9 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만수동 1052번지)사업 실시계획 고시	 222

회
람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11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647호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 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등)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및 공유)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구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절차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동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한 수단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1. 공공갈등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소속 국·실장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남동구의회 의원

나. 시민단체 대표

다. 공공갈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공공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경우에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원만한 조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공공갈등과 관련된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해당 공공갈등과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

나. 해당 공공갈등의 이해관계인

다. 그 밖에 공공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그 중 2명 이내의 대표 당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협의 사안이 있을 때마다 활동기간을 정하여 구성하되, 그 활동기간이 종료되거나 해당 공공갈등 사안이 종료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공공갈등 사안이 조정되면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협의결과문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협의결과문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갈등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공공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
2.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4.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7조(비밀 준수)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 및 제16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공공갈등의 심의 또는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공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구청장은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민원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제4조)
-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제8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제9조~제11조)
-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제13조~제15조)
-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제16조)
-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제19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11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648호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3.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 관할의 해수면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 및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구 관할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및 익수자·고립자 등의 인명구조 관련 사고

2.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5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 경비는 수난구호활동에 사용된 선박이나 장비 등의 유류비와 인건비로 한정한다. 다만, 유류비와 인건비 이외에 구청장이 원활한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지원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 해양경찰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종사업무				
구호 명세	유형	내용		
	동원장비			
	사용시설 등			
	기타			
구호비용	금액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

해양경찰 파출소장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	--

210mm× 297 mm(백상지 80g/㎡)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제1조 ~ 제3조)
- 지원대상,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 제5조)
-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제6조)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11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649호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041호, 2018.12.24.공포, 2019. 1. 1.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일몰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2조)
 - 감면 기한 연장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5조)
 - 감면 기한 연장 :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11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650호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

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구청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장애인복지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관

가.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업

나.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다.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장애인의 민원사무 처리 지원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가. 지적, 자폐성 등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나. 이용자의 자립생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 및 교육지도

다. 이용자의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의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임금 지급

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직업상담

다. 직업적응 훈련 및 직무기능향상 훈련

라. 문제해결 훈련 및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이용대상)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하되,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의 일부 시설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장애인복지시설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

만, 장애인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운영의 방법 및 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와 제21조의2를 따른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후원금 등 모든 재산을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보수, 증축,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증가된 재산은 구 재산으로 귀속한다.

⑤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기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때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수탁 협약 체결된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시설 유형	명 칭	위 치
장애인복지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본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만수동) 별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서로 23번길 17(만수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늘푸른동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서로 23번길 17(만수동)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열린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서로 23번길 17(만수동)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우리 구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세부 명칭 및 위치, 업무와 기능을 구체화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면 보완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및 위치의 세부사항 (제3조)
- 장애인복지시설의 업무와 기능(제4조)
-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위탁 및 해지(제8조, 제9조, 제10조)
- 장애인복지시설의 지도감독(제12조)
-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명시(제13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11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651호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건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2.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 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제3조(구조)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가. 건축물의 높이는 4미터 이하일 것

나. 건축물은 하나의 동으로 건축할 것

2. 건축을 위한 성토의 높이가 50센티미터 이하일 것

3.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 벽체는 1.2미터 이하 높이의 조적식구조(벽돌 등 재료를 쌓아올리는 방식)로 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일 것

가. 경량철골조

나. 조립식 패널조

다. 철판이프조

5.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제4조(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입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토지가 아닐 것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에 따른 우량농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다만, 현재 지목이 임야인 경우라도 항공촬영 상태가 전·답인 토지는 이 목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2. 폭이 4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또는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

3. 축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라)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1. 제4조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소유한 자

2.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외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을 소유하며, 허가

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

제6조(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 분할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조경 면적) 영 별표 2 제3호다목 단서에 따라 영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 온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연면적(같은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 또는 설치 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제6조 관련)

1. 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을 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가. “분할”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나. “택지식”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바둑판식”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라.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 2)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 3) 신문,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3. 분할의 허가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가할 수 있다.

가.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이 아닐 것
나. 기획부동산(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이 아닐 것
다. 하나의 토지에 대한 분할의 경우 그 분할한 필지수가 1년 내 총 3필지 이하일 것. 다만, 상속 토지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제2조)
-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에 관한 사항 (제3조)
-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입지기준에 관한 사항 (제4조)
- 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
- 토지 분할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제6조)
-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11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652호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수량 및 영업 기간 등을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 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 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특정하여 별지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와 해당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기간 등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수익허가 등 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 번호 등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요청)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 기관,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사항	영업의 종류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소재지를 적습니다)	
	사용기간 : . . ~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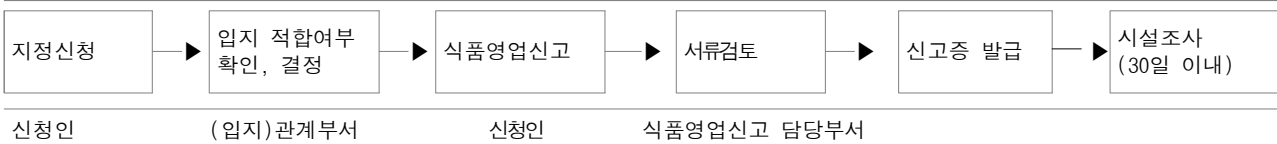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지정 신청 장소 계약서 및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유의사항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리절차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영업장소를 추가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장소 확대를 위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가 직접 영업장소를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신고 표시 등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세부항목 추가 신설 : (제2조제1항제3호)
- 영업장소 지정신청 신설 : (제4조)
- 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신설 : (제5조)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표시 신설 : (제6조)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918호

「고잔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고잔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1.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지구의 명칭 : 고잔2지구
2. 사업시행자 : 남동구청장
3. 사업기간 : 2016. 10. ~ 2019. 10.
4. 사업완료 필지 수 및 면적 : 277필지, 128,375.5㎡
5. 다음 각 호의 사항 : 지적확정조서(붙임1) 참고
 - 가. 토지의 소재지
 - 나.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 다. 산정된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 라.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6.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공람장소 : 남동구 토지정보과
8. 공람 비치서류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9. 문의처 :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6154)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9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구와 위·수탁 계약 체결을 통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해온 제이에스엠글로벌(주)는 2019.10.01.일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와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를 위반하여 남동구 행정재산(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판매장)을 무단점유하고 있어 제이에스엠글로벌(주)와 입점계약 등을 통하여 전시 판매장에 입점한 입점업체의 제품 반출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제 목 : 남동구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판매장 내 입점제품 반출(회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11.01.(금).~2019.11.17.(일)
3. 반출기한 : 2019. 11. 17(일) 18:00
4. 대상업체 : 불임참조 (명단 누락되어 있으나 2016.02월 이후 현재 입점한 모든 제품 포함)
5. 공시송달 사유
 - 우리구에서는 2019.10.01.일(기업지원과-13086호) 남동구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판매장 입점업체에 대한 제품 반출을 우편(등기,일반)으로 송달하였으나 입점업체의 미이행과 반송(이사·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시 송달하게 되었음
6. 기 타
 - 이행기한인 2019.11.17까지 남동구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판매장에 전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의 반출(회수) 완료
 - 이행기한 내 반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실시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안내 : 남동구 기업지원과 【☎ 032-453-2691】

2019. 11. 01.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중소기업 우수제품 입점업체 명단

○ 기준 : 제이에스엠글로벌(주) 2019.3.31현재 제출 자료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제 품 명
1	(주)항진축산	인천시 남동구 남동동로 154번길47	육포
2	BL(비엘)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	실리콘 도마(냉장고 도마)
3	가린시스템㈜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96-9번지	자동차 원격시동 경보기
4	가스타코리아	인천시 남동구 은청로96	와이드그릴
5	대경제약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14, 2층	구강세정제
6	대산산업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330번	왕관, 책갈피, 부채
7	디엠코스메틱	인천시 남동구 남동동로77번길 27	쿠션,립글로스,아이라이너
8	로고스크래프트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53번길 38 A-303호	실리콘 조리기구,국자, 집게, 가위, 실리콘
9	링크플러스	인천시 남동구 남동동로 138번길85	에어매쉬방석,매트
10	마띠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314-16 2층	마카롱,브라우니
11	말표산업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산단1호 53-15(남동공단->김포)	구두약, 다리미폴, 스위퍼(세정제)
12	민속물산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624,2층	김,미역,다시마,자반볶음
13	버섯박사	인천시 남동구 비류대로 900,5호(도림동)	미니하우스(버섯)
14	블레스웰빙	인천시 남동구 장승남로69번길 24-10, 2층 201호	달팽이엑기스
15	비마인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511-1 3층 302호	비닐장갑
16	삼정 G&B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838-1	액상 소화기
17	선봉식품	인천시 서구 검단로 93번길31	해장국,삼계탕,소내장탕,육개장
18	소망화장품	인천시 남동구 앵고개로 404	다나한,플로르드망 스킨로션
19	신광예코팜	인천시 남동구 구수골로 20(수산동)	고사리,도라지,연근채,곤드래,무청,고구 마줄기
20	실버렉스	인천시 남동구 능허대로577번길	아로마가습기,세탁볼,샤워기,스프레이
21	쌍마브레이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270-2 효진피아106	이발기
22	씨엘엠	인천시 남동구 인하로 515	문구클립
23	아이미코	인천시 남동구 앵고개로 506(고잔동)	4종셋트,샴푸,크림
24	에프엘티코리아	인천시 남동구 남동동로 33번길10	LED무타공조명
25	여행라면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77-14	여행라면
26	예림기획(디알케이) (필네이처)	인천시 남구 청능대로 340번길 23	토너,크림,로션,천연비누
27	웰빙찬간마을	인천시 동구 송림2동 54-72	멸치,다시마,표고,황태,생강,김부각
28	웰빙헬스팜(생활,화 장품)	인천시 남동구 남동동로138번길 36	비누, 칫솔, 스카프
29	유승메디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856 4층 성림빌딩	보호대
30	자연만세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850번길5-18 2층	석류,석류원액,유자,블랙베리
31	제이에스엠글로벌	인천시남동구앵고개로934번길5 (205호 씨티짱)	고주파기,괄사,마사지바,샴푸,린스,마스 크팩,진공냄비, 헤어핀,커피포터,선풍기,우산
32	(주)미랜	인천시 남동구 함박외로	음식물 처리기, 가스타이머
33	(주)민속고향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22 (151블럭 6로트)	술임김,자반볶음,미역,다시마
34	(주)제이앤씨글로벌	인천시 남동구 남동동로 74번길 41(2층)	실리콘수세미,비누받침대,실리콘도마,

			멀티매트, 스텐샬세척기,그릇,스마트아이엔젤
35	(주)다벨 (전시 5)	인천시 남동구 승기천로 338	멜로디혼,실로폰,리코더,하모니카,오카리나
36	(주)다함께	인천시 남동구 이임대로 1223 제1동 1층	물티슈,양산,타월
37	(주)버텍스코리아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42 남동공단 53b	기능성 마스크, 두건
38	(주)서울제과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288	전통명과(선베이류,김맛,땅콩,계피,생강,미니김맛)
39	(주)세모콘 (전시1품목)	인천시 남동구 청능대로289번길 45	outdoor cctv
40	(주)스킨소울앤티뷰티	인천시 남동구 승기천로36	소서노생리대
41	(주)씨피엔텍	인천시 남동구 남동동로 84	LED램프
42	(주)아로마뱅크	인천시 남동구 함박외로377번길 154	방향제, 향수
43	(주)아이링고	인천시 남동구 함박외로 403	강아지,레미콘,모터싸이클,미니카,불도저,비행기, 지게차,트랜스포머,포크레인
44	(주)엘라코스메틱	인천시 남동구 남동동로33번길	마스크,크림,에센스,토닉,선크림,버블폼
45	(주)유진토스코 (토스코하이본)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11-3	찜솥,전골,사각에그팬,샤브냄비,온나노 코팅복경팬, 궁중팬,후라이팬
46	(주)이레인텍 (전시2)	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 44번길88 남동공단170B-14L	공기청정기(차량,실내용),블루투스스피커,LED방등, LED투광등
47	(주)천우굿프렌즈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247번길 48, 4층	칫솔살균기, 치약짜개
48	(주)케이트로닉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76-7 404호	LED천연 훈증기
49	(주)케어코스	인천시 남동구 은청로 16 동아빌딩 503-1호	탱자로션,스킨
50	(주)토일러	인천시 남동구 논현고잔로88번길 74, 1층	육식세정제,손소독제,소변기탈취제, 기름때제거제,물비누,거품비누
51	(주)트리플라이프	인천시 부평구 평천로 134	기능성생리대,치약,치솔, 비누,수세미,탈취제,타월
52	(주)팝폰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42-1	핸드폰,거치대,휴대폰충전기
53	지사랑	인천시 남동구 포구로64-6 한라APT 101/605	한지공예전등
54	창신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75(남동공단 22블록 7로트)	냄비
55	캐츠워즈리서치	인천시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 41-25, 102호	캐츠워즈 분석SW
56	코나드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90-10	리무버,에센스,오일,크림,팩,네일,탐코트, 스킨케어,주딩젤,글렌저,젤,스탬핑세트, 스페셜세트,아이브로펜슬,립스틱,마스카라,쿠션,파운데이션,아이섀도,젤펜슬, 립스틱
57	코나스코스메틱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14, 23블록 2로트	모나이트, 루트솔루션크림
58	태후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144번길 41 (고잔,남동공단82b-12l)	화장품, 염색약
59	피스코리아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199번길 9(고잔동)	스태플러,침
60	피엘코스메틱	인천시 남동구 남동동로 197번길 46(고잔동) 남동공단72블럭15	샴푸,헤어팩,에센스
61	한국도자기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173-6 한국도자기 빌딩	그릇, 커피잔, 다기
62	한국전해수시스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74, 팩트리월드 904	과일세제외
63	해가농 (전시 1)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299-8	완숙토마토 100%
64	해주부용식품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로35번길 14	고기만두,김치만두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929호

취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성 명 김**희 외 13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2019년 10월 수시분 및 19년 8월 독촉
취득세 고지서서 류 의 내 용 2019년 10월 수시분 및 19년 8월 독촉
취득세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납기 2019.10.31.을 2019.12.01.로 변경하여 공시하오니 납기 내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9. 11. .

남 동 구 청 장

취득세 2019년 10월 수시분 및 2019년 8월 독촉분 공시송달내역

연번	주민법인번호	납세자명	과세번호	공고사유	세액합계
2	690721-*****	김**희	101501-2019-10-2-582-063527	폐문부재	982,420
3	830516-*****	정**호	101501-2019-10-2-580-063529	폐문부재	914,940
4	760410-*****	편**영	101501-2019-10-2-570-063981	보관기간경과반송	1,645,920
5	540103-*****	손**수	101501-2019-08-2-540-049891	수취인미거주	1,862,660
6	490415-*****	미**숙	101501-2019-08-2-690-050291	수취인미거주	3,342,340
7	490415-*****	미**숙	101501-2019-08-2-690-050292	수취인미거주	3,181,420
8	651026-*****	박**욱	101501-2019-08-2-551-050293	수취인미거주	395,080
9	640528-*****	장**국	101501-2019-08-2-522-051050	수취인미거주	878,030
10	920411-*****	정**인	101501-2019-08-2-580-051058	수취인미거주	963,940
11	110111-*****	주**회**채**리**(*h*n*o*e*o*,*L*d*)	101501-2019-08-2-580-051106	수취인미거주	2,539,440
12	661109-*****	홍**대	101501-2019-08-2-650-051350	수취인미거주	7,099,500
13	120111-*****	(주)대**개**	101501-2019-08-2-583-051625	수취인미거주	7,772,690
14	720602-*****	백**연	101501-2019-08-2-530-051626	수취인미거주	2,282,160
15	120111-*****	(주)제**엔**미**트**스	101501-2019-08-2-710-052824	수취인미거주	20,652,01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931호

- 노인돌봄체계 개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에게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19. 11. 1.

남 동 구 청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모집기관 : 2개 기관
 - 1개 권역당 1개의 수행기관이 담당
- * 권역은 사업의 효율성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권역 구분	1권역	2권역
관할지역	구월1~4동 간석1~2동	간석3~4동 만수4~6동
서비스관리자	2명	2명
비고	*특화사업 수행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등)	

- 사업내용
 - 기존 3가지 개별사업(노인돌봄기본,종합,단기가사) 등 서비스 통합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전 확인, 건강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욕구·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계약)기간 : 2020. 1. 1. ~ 12. 31. (평가 후 재위탁 가능)
- 지원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등
 - ※ 권역별 수행인력(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 추후 조정 가능

2. 수행기관 선정기준

□ 신청자격

- (자격요건)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 * ‘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 등 시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시설 모두 가능(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참여 불가)
-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운영 하는 관내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전체의 방문요양 수급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아래 참고)

< 장기요양 방문요양 제공규모 제한 기준 >

- (대상) 동일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전체
- (기준) 각 시설이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적용일: '20.1.1.)
 - * 20% 이상 감축하는 경우 심사 배점을 달리 함
 - * <예시>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A시설과 B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A시설에서 동 사업을 하려는 경우, A시설과 B시설 모두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 ‘유지’란 현재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문요양서비스 수급자 수를 확대하지 않는 것임(예: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이용자수가 100명인 경우, 100명 이하를 유지)
 - * 공모 시점에는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 사업 시작시점('20.1.1.)부터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가능(하반기 대상자 이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설기준)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①사무공간, ②상담공간, ③프로그램실을 갖추어야 함

확보필요 공간	기준	규모
① 사무공간	전용공간	서비스관리자 사무공간, 생활관리사 교육공간, 돌봄대상자 상담공간 등 확보 필수
② 상담공간	전용공간	
③ 프로그램실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활용계획 마련 * 별도의 공간활용계획(예-종합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연건 대여 계획 등) 마련 시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	최소 10인 이상이 활동 가능한 공간으로 사업계획서 상의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안내사항

- 하나의 법인에서 1개 권역별 1개 시설만 공모 참여 가능
- 수행기관이 신청한 권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도 해당 권역 공모 참여 및 사업수행 가능

3. 신청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11.4.(월) ~ 2019.11.8.(금) (5일간)
- 접수기간 : 2019.11.4.(월) ~ 2019.11.12.(화) (7일간)
- 신청서 배부 : 인천 남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 접수방법 : 방문 접수(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 ※ 근무시간(09:00 ~ 18:00)내에만 접수 가능. 마감일 18시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인천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 032-453-5853)
- 신청자 : 법인 대표자 또는 시설장, 신분증 지참

4. 제출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
- 법인(기관) 일반현황 1부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1부
-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 시. 별도 양식 없음) 1부
 - *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인원 포함
 - ※ 신청서 및 증빙자료는 1권으로 편철(1권으로 편철하기 어려울 경우 2권으로 편철)하여 원본포함 10부 제출
 - ※ 모든 작성서류는 A4용지에 한글로 작성하되, 제출서류 순서별로 편철하여 반드시 쪽번호를 기재하고 항목별 견출지를 부착하여 제출
 - ※ 모든 사본 자료는 원본 대조필 날인 제출
- 제시된 서류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5. 선정기준 및 결과 통보

□ 선정기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수행기관으로 ①공공성을 갖추고, ②지역사회 노인복지 네트워크의 중심기관(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기관)이며 ③효과적인 사업수행이 기대되는 기관

□ 선정방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 심사 일정은 추후 신청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시설기준 등 정량적인 사항과 유사사업 수행경험, 사업수행의 전문성 등 정성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 신청인은 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신청접수 순으로 제안 설명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하되 심사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신청기관 대표 또는 관계자(사무국장 또는 과장급 이상)에 한함.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심사내용	배점(점)	비고
총점		100	
공공성	○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방문요양급여 제공 유무 및 감축 또는 제한(유지) 계획 부분	20	
지역사회 네트워크	○ 지역자원 발굴 · 연계	30	
효과적인 사업수행	○ 시설기준 · 인력요건 ·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전문성, 기타 기관차량 및 사무기기 보유 여부	50	

- 수탁법인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 수탁운영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결정
- 심사기준표에 의해 최소 기준점수(60점 이상)을 받은 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 선정(최고, 최저 점수 제외)
- 권역별 최고득점이 동점일 경우, 공공성 > 지역사회네트워크> 사업수행능력 점수 획득 순으로 선정
- 수행기관 선정 후 법인사정 등에 의해 수탁 포기 또는 취소 시 심사결과에 의한 차점법인으로 수행기관 선정
- 공개모집 결과 단독 신청 및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재공고시 단독신청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 공모(재공고 포함)·심사 결과, 권역보다 적은 수행기관이 선정된 경우에는 재공모 없이 구청장의 직권으로 권역을 축소·조정하여 수행기관 확정
- ※ 공모(재공모 포함) 결과 60점 미만은 탈락

□ 결과통보

- 발표일 : 2019.11.18.(월),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 개별통지는 선정 기관에 한함.

6.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수정) 서류제출은 불가하며, 남동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모자격의 부적합이 발견될 경우 위탁법인 선정·협약 체결 이후라도 이를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차점법인과 협의하여 위탁법인으로 선정함.(차점법인의 심사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법인이 없을 경우 재공고)

- 신청 법인은 관계법령 및 사업자 신청자격 조건 등을 숙지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법인의 책임으로 함.
-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은 비공개로 함.
- 기타 문의사항 남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32-453-5853)
 -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 관련 서류 각 1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신청서

사업명				
신청지역	시·군·구		권역	
신청법인	법인명	○○법인, ○○사회서비스원 등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서비스원
	주 소			
	전화번호		E-mail	
신청법인 운영 시설	시설명		시설장	
	시설종류	☐ 노인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경우 제공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 재가급여)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의미 ☐ 그 외 사회복지시설(시설종류: _____) ※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 기타 시설(시설종류: _____) ※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등		
	운영기간 (위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본 법인(기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자 수행기관 선정 공모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법인 (직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구비서류>

1. 법인(기관) 일반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4.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1부
5.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될 경우에 한함)(별도 양식 없음) 1부

[붙임 1]

법인 일반현황

법 인 명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법인 유형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서비스원				
설립일			주무관청		
설립목적	○ ○ <i>※ 개조식으로 작성</i>				
주요연혁	○ ○ <i>※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i>				
주요사업	○ ○ <i>※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i>				
법인운영 기관 수	전체 기관 수	<i>※ 해당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전체 수(장기요양기관 포함)</i>		기관명	
(해당 시군구 소재지 기준)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수	<i>※ 해당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급여 제공기관 수</i>		기관명	

[붙임 2]

사업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의 필요성 기재

2. 사업 목적

※ 동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

3. 사업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지역자원 활용 방안

1) 협력체계 구축 여부 및 계획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기관의 목록을 기재(예: 유관 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예: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

번호	협력기관	협력내용	연속성(✓)
1			☐
2			☐
3			☐

2) 후원연계 실적(최근 3년)

- ※ 최근 3년간 노인 대상 후원금품 연계 실적 기재(법인이 운영하는 기관 전체 실적이 아닌 동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관의 실적에 한하여 작성)
- ※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근 설립된 기관이므로 후원연계 실적은 생략

연도	후원금액	후원연계 대상노인 수	후원내용	후원처
계				

첨부서류

최근 3년간 후원연계 실적

3) 지역자원 발굴 계획

- ※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자원 발굴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사업 수행 인프라

1) 시설 기준

- ※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 상담공간 및 프로그램실을 확보하였는지 내용 기재(전용공간 여부, 위치, 규모 등), 필수공간 외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였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 사무공간

- (전용공간 여부)
- (위치)
- (규모)

번호	필수 확보공간	위치	내용	확보 여부(✓)
1	사무공간	○○기관 ○○층	전용공간	☐
2	상담공간		전용공간	☐
3	프로그램실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 활용계획 마련	☐
번호	추가 확보공간	위치	내용	확보 여부(✓)
4				☐

첨부서류

각 공간별 증빙사진, 프로그램실 별도 공간 활용계획(해당 있는 경우)

2) 인력 요건

※ 수행인력 외에 동 사업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수행기관 자체 인력, 국비 인건비 미지급)를 배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3) 기타 요건(차량, 사무기기 보유)

※ 대상자 송영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한 기관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차량 종류, 수량, 운영계획 등)

※ 제공인력 업무수행을 위한 PC,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사무기기 종류, 수량 등)

6. 유사사업 수행 경험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노인돌봄 관련 사업*을 적절히 수행한 경험 기재(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성과 등)

* 노인돌봄 관련 사업: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 지자체 자체 사업 등

7. 사업수행의 전문성

※ 법인 및 시설장이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주요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

8. 사업 수행의지

※ 법인 및 시설장이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비전, 목표, 열의도 등) 기재

9. 사업비(프로그램 운영비) 집행계획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급될 예정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재

* 예시) ①어르신들의 사회참여지원을 위한 심리프로그램 개최, ②병원·외출동행 등의 일상생활 지원에 따르는 사업비(유류비 포함) 집행계획, ③낙상예방, 인지저하 예방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교육 지원계획 등

10. 기대효과

※ 사업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11. 사업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월 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932호

남동구 만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남동구청장

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 채용인원 : 만월종합사회복지관장 1명
- 채용기간 : 2년(2020.1.1.~2021.12.31.)

2.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 자격요건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주소제한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된자(단,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의 주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연령제한 : 1956. 7. 1.이후 출생자
- 응시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시설의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4.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9.11.13.(수)~11.19.(화) [5일간]
- 접수장소 :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2층)
 - 근무시간(09:00~12:00, 13:00~18:00)내 방문접수에 한함
 -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 양식 출력 사용)
 -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칼라사진 3.5cm×4.5cm 부착
 - 이력서 1부 (붙임 양식 출력 사용)
 -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양식 출력 사용)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양식 출력 사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붙임 양식 출력 사용)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5. 보수 및 근무조건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 지침」 및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운영 지침」에 따름
 - 근무형태 : 주5일, 1일 8시간 근무(9:00~18:00)
 - 근무지 : 만월종합사회복지관
 - 보수 :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원 봉급 및 수당 기준표에 따름

6. 시험구분 및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합격자발표
서류전형(1차)	2019. 11.20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2019. 11.21.
면접시험(2차)	2019. 11.27.	남동구청 (개별통지)	2019. 11.28.

- ※ 서류전형 접수시 1명 접수시는 재공고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적의 변경될 수 있음
-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 게시

7. 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표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채점결과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없을시 재모집 공고

8.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2019. 11. 28.(목)
- 방법 : 개별통지
 - ※ 최종합격자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시 합격취소

9.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일 : 합격통지 후 7일 이내
-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소, 병역사항 포함)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 ※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일 내 미제출시 합격취소
 - ※ 합격자는 2020.1.1부터 해당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여야 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내용의 착오, 누락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면접시험응시자는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집합하여야 함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통지)
- 제출한 서류는 2020.1.2.~3.31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7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1. 시험관련 문의처

-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453-2502)

응 시 원 서 (원 본)

남동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채용시험에 응시 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취소 또는 고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서명)

2019년 월 일

주 소	(㉠)				
최 종 학 력	대학교명: (전공) / 년 월 졸업				
	대학원명: (전공) / 년 월 졸업, 수료.				
최 종 경 력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직장명: /직위:)				
응 시 번 호 (※)		성 명	(한 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	
			(한 자)		
응 시 분 야	만월	생년 월일	-	종목및등급 : 등록번호 :	
				확인(※)	

응 시 원 서 (부 본)				사 진(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응 시 번 호 (※)		성 명	(한 글)	
			(한 자)	
응 시 분 야	만월	주민등록번호	-	

응 시 표	성 명	(한 글)	사 진(2)
응 시 번 호 (※)	생년 월일	-	
응 시 분 야	만월	2019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접수처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접시험 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을 지참하여 면접시험 30분전까지 면접 대기 장소에 오셔서 본인 확인을 받으신 후 면접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는 아래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되 성명과 서명은 반드시 본인의 필체로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한다.
- ② 학 력 : 출신대학교는 첫줄에 기재하고, 대학원의 경우 두 번째줄에 기재하되
졸업의 경우 최종대학원의 졸업증명서만 제출하고,
수료의 경우 대학원 수료증명서 및 직전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
- ③ 경 력 :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 직장명 및 직위를 명기할 것
- ④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사진(1)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이 력 서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한 자		연락처(휴대폰)	
	주 소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공(학위)
경 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 위	담 당 업 무
자 격 증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발 급 기 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차후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 합격취소 또는 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인)					

※ ‘학력, 경력, 자격사항’ 란 부족시 별지 추가 작성 제출 가능.

종합사회복지관장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신규 채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연락처, 병역사항, 자격증 등	종합사회복지관장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심사 제외, 응시원서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학력, 경력, 자기소개 등	종합사회복지관장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심사 제외, 응시원서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면접심사위원	종합사회복지관장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자료 및 채용절차 진행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자기소개 등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심사 제외, 응시원서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만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신규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 정 정 보 명
1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주민등록표 등.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_____ - _____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933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 11. 04.

남 동 구 청 장

1. 처 분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1. 04 ~ 2019. 11. 19(15일간)
3. 공고대상 : 별 첨
4.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니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 및 실제운행자는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 자동차 사용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 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 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 과속·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 의 지속)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의2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1)

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사용본거지주소	등록일
1	**다9615	에쿠스(EQUUS)	염*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1104번길 34	2019.10.31
2	**어1243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선*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98	2019. 10. 30
3	**로0823	마이티냉동차	김*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08번길	2019. 10. 29
4	**하3855	K5	주식회사 플레이렌트카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65번길 28-9, 1층 101호(구월동)	2019. 10. 29
5	**누2770	K5	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5	2019. 10. 29
6	**어2290	쏘렌토	서*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08번길 17(구월동)	2019. 10. 29
7	**하2535	SM3	신한카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인천지점)	2019. 10. 28
8	**러9876	SM5 LPLi	고*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715번길 59	2019. 10. 25
9	**버4082	그랜저(GRANDEUR)	주*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70-30	2019. 10. 24
10	**구1415	K5	김*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23번길 31, 1505호(구월동)	2019. 10. 24
11	**하0440	그랜저(GRANDEUR)	신한카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19. 10. 23
12	**하8185	SM5 LPLi	신한카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19. 10. 23
13	**누3549	쏘나타(SONATA)	설*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20번길 73	2019. 10. 22
14	**너5894	그랜저(GRANDEUR)	한*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서로47번길 16	2019. 10. 22
15	**하7152	EQ900	메리츠캐피탈(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42-1	2019. 10. 22
16	인천**나5670	스타렉스장축12인승	유*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49번지	2019. 10. 22
17	**저8051	쏘렌토	이*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92번길 32	2019. 10. 22
18	**루4613	SM3	김*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22번길 36	2019. 10. 22
19	**호8032	카니발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42-1, 301호(구월동, 오성빌딩)	2019. 10. 18
20	**어6803	그랜저(GRANDEUR)	심*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99번길 8	2019. 10. 17
21	**나5016	E220 d 4Matic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79, 3층(구월동)	2019. 10. 17
22	**로0499	Tiguan 2.0 TDI BMT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79, 3층(구월동)	2019. 10. 17
23	**하1643	G80	신한카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19. 10. 16
24	**호9058	쏘울	신한카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19. 10. 16
25	**저0145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메리츠캐피탈(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42-1, 301호(구월동, 오성빌딩)	2019. 10. 15

제1501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11. 8. 금요일

26	**수0120	메가트럭	이*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58	2019. 10. 14
27	**하0746	카니발	신한카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19. 10. 11
28	**다8099	그랜저 하이브리드	삼성카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구월동)	2019. 10. 10
29	**호5887	K7	삼성카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구월동)	2019. 10. 10
30	**호3829	K7	삼성카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구월동)	2019. 10. 10
31	**머8171	BMW 520d	김*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25-7	2019. 10. 10
32	**호8983	K7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 9층(구월동)	2019. 10. 04
33	**두1281	Tiguan 2.0 TDI Blue Motion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79, 3층(구월동)	2019. 10. 04
34	**호2350	K7	메리츠캐피탈(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42-1, 301호(구월동, 오성빌딩)	2019. 10. 02
35	인천**너1691	렉스턴	이*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99번길 11-1	2019. 10. 02
36	**러1713	A4 2.0 TFSI Quattro	송*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5	2019. 10. 02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935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9.9.25.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4.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 업 위 치 : 인천시 남동구 용천로105번길 19일원(구월동70-16)
3. 사업 시행자 :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수용재결서 정본(사본)
5.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무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76번길 24 (구월동)
금제빌딩 2층 ☎032-469-4693)
6. 공시송달 대상 : 첨부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기재와 같음
7. 공시송달 사유 : 주소 및 거소 불분명 등
8.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9. 11. 4. ~ 2019. 11. 22. (14일간)
9. 기타

가.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시 청구서 등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시송달대상자 목록 (지장물)

일련 번호	수용(사용)할 물건의 표시						재결역(안) 보상금	소 유 자			관 계 인	
	동(리)명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규격	면적 수량	단위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남동구 구월동	69-13	주 택(1층)	연와조 스라브	66.32	m ²	120,050,000		이 * 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1 * 번길 21 바동 20 * 호(구월동, 희망빌라)		
		희망연립 가동 104 호	계단실(1층)	연와조 스라브	5.52	m ²	-					
			베란다(1층)	연와조 샷시 스라브	3.5	m ²	-					
			지 중(공용)	연와조 스라브	9.52	m ²	-					
	남동구 구월동	69-14- 15-66	주 택(2층)	연와조 스라브	66.32	m ²	122,550,000		이 * 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1 * 번길 21 바동 20 * 호(구월동, 희망빌라)	주영선 (가압류)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27, 611동 270 * 호(한솔 동, 첫마을아파트)
		희망연립 바동 202 호	계단실(2층)	연와조 스라브	5.52	m ²	-					
			베란다(2층)	연와조 샷시 스라브	3.5	m ²	-					
			지 중(공용)	연와조 스라브	14.5	m ²	-					
							-					
							-					
계							242,600,000					
2	남동구 구월동	70-19	주 택(4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46.25	m ²	127,350,000		고 * 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84번길 53 5동 50 * 호 (구월동, 희망아파트)		
		희망아파 트 5동 503호	계단실(4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5.98	m ²	-					
			베란다(4층)	철콘 샷시 스라브	3.6	m ²	-					
			베란다(4층)	철콘 샷시 스라브	6.72	m ²	-					
			지 중(공용)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9.89	m ²	-					
			관리사무실, 펌프장(공용)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0.413	m ²	-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시송달대상자 목록 (지장물)

일련 번호	수용(사용)할 물건의 표시						재결역(안) 보상금	소 유 자			관 계 인	
	동(리)명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규격	면적 수량	단위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공중변소(공용)	연와조 스라브	0.068	m ²	-					
계							127,350,000					
3	남동구 구월동	70-28	주 택(2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46.25× 1/2	m ²	63,975,000	1/2	최 * 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97번길 27, 6동 20 * 호 (구월동, 회광아파트)		
		회광아파 트 6동 202호	계단실(2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5.98× 1/2	m ²	-	1/2				
			베란다(2층)	철콘 샷시 스라브	3.60× 1/2	m ²	-	1/2				
			베란다(2층)	철콘 샷시 스라브	6.72× 1/2	m ²	-	1/2				
			지 층(공용)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9.89× 1/2	m ²	-	1/2				
			관리사무실, 펌프장(공용)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0.41× 1/2	m ²	-	1/2				
			공중변소(공용)	연와조 스라브	0.07× 1/2	m ²	-	1/2				
계							63,975,000					
4	남동구 구월동	70-67	주 택(4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76.02	m ²	145,900,000				임 * 수 (근저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142, 304동 10 * 호(용종동, 초정마을두산아파트)
		구월이노 빌 2동 401호	계단실(공용)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7.681	m ²	-					
계							145,900,000					
5	남동구 구월동	70-109	주 택(3층)	연와조 스라브	43.73	m ²	76,300,000				공 * 오 (상속대상자)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12 * -3(역곡동)
		원정빌라 B동 301 호	(공용)	연와조 스라브	5.46	m ²	-					
							-					
							-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시송달대상자 목록 (지장물)

일련 번호	수용(사용)할 물건의 표시						재결역(안) 보상금	소 유 자			관 계 인	
	동(리)명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규격	면적 수량	단위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					
							-					
계							76,300,000					
6	남동구 간석동	142-4	주 택(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58.28	m ²	105,500,000				유 * 연 (가압류)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29번길 73, 1동 50 * 호(송 내동, 동신아파트)
		조문파크 빌라 202 호	계단실(공용)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5.49	m ²	-					
계							105,500,00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936호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시송달 공고(정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7-148호(2017. 12. 20.)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소유자, 영업권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협의요청서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1. 5.

남 동 구 청

- 가. 사 업 명 :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나. 사업시행구역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00-138번지 일원
(32,368.4㎡)
- 다. 사업시행자 :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낙인
- 라. 공고기간 : 2019년 11월 5일 ~ 2019년 11월 19일
- 마. 송달대상 및 내용 : 별첨 내역참조
- 바. 협의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5일간
- 사. 협의장소 :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0-1, 3층(주안동) ☎ : 032-424-8717)
- 아. 협의방법 : 관계법령에 따라 3개 감정평가업체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사업시행자와 당사자 간의 직접협의(기간 내 서면, 구두,
전화통지로도 협의가능), 협의 성립시 현금 직접보상
- 자.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보상협의 후 추후 통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032-424-8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송달대상 및 내용

연번	동명	소재지	구분	지 목 (물건의 종류)	이용 상황 (구조)	면 적	소유지분	송 달 지	성 명	권리의 종류
1	간석동	899-002	토지	대	대	429.20	565/1428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 137-★ (십정동)	이★석	소유권
2	간석동	900-019	토지	대	대	55.70	22.55/2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524번길 111-1★, 101호 (간석동, 명성이트빌)	구★회	소유권
		900-147	토지	대	대	161.30	22.55/217			
		900-019 900-147	물건	다세대 주택 (101호)	철근콘 크리트	48.76	1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943호

남동구 청소년시설(상담복지센터, 문화의집) 시설장 채용 공고

남동구 청소년시설(상담복지센터, 문화의집) 시설장(센터장/관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남 동 구 청 장

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 채용인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명
 - 남동청소년문화의집관장 1명
- 채용기간 : 2년(2020.1.1.~2021.12.31.)

2.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 자격요건 : 불임2 참조
- 성별 연령, 거주지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 받은 자)
- 응시 결격사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수련시설 대표)
 -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4. 보수 및 근무조건

- 보수
 - 여성가족부 지침 준용
 - 기본급(호봉제), 제수당
 -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
 - 근무조건 : 주40시간(주5일)

5.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9.11.11.(월)~11.18.(월)
- 접수장소 : 남동구청 가정복지과 청소년시설TF팀 (남동구 만수서로 70 만수동, 문화의집 2층)
 - 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2:00, 13:00~18:00)내 방문접수에 한함
 -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불임 양식 출력 사용)
 - 이력서 1부 (불임 양식 사용)
 - 자기소개서 1부 (불임 양식 사용)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불임 양식 사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불임 양식 사용)
 - 시설 운영 계획서 1부(불임 양식 참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청소년관련 등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6. 시험구분 및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합격자발표
서류전형(1차)	2019. 11.18	남동구청 가정복지과 (청소년시설TF팀)	2019. 11.19.
면접시험(2차)	2019. 11.21.	남동구청 (개별통지)	2019. 11.25.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적의 변경될 수 있음
-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통지

7. 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표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재선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로 선발하되, 차순위자로 선발이 미흡(60점 미만) 하다고 판단 될 때 재공고

8.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2019. 11. 25.(월)
- 방법 : 개별통지 및 남동구 홈페이지
- ※ 최종합격자중 결격사유 등 부적격 판정시 합격취소

9.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일 : 합격통지 후 2일 이내
-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 ※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일 내 미제출시 합격취소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내용의 착오, 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면접시험응시자는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집합하여야 함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통지)
- 시험결과에 따른 제반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함

11. 시험관련 문의처

- 남동구청 가정복지과 청소년시설TF팀 (☎032-453-6036~7)

(붙임2)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

1. 1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 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944호

**반환기간 5년 이상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1. 6.

남 동 구 청 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1. 6. ~ 2019. 11. 20. (14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규칙 제77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지출팀(☎ 032-453-28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2019.10월 기준)

부서	현금종류	수납일자	고지적요	납부자	반환기일	보유액(원)
환경보전과	기타보관금	2011-10-06	[환경보전과]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수납분	환경보전과	2014-10-31	285,180
평생교육과	국민연금	2013-02-20	[평생교육과]2013.2월 도서관시간제계약직 임금공제	김*숙 외5	2014-02-28	32,630
토지정보과	도근점	2013-12-13	[토지정보과]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비용(서창지구 재포장공사, 35점)	토지정보과	2014-02-28	50,930
보육정책과	국고반환금	2014-02-14	[보육정책과]2013년도 일시보육사업 운영 국시비보조금 이자수입	보육정책과	2014-06-30	2,420
도시경관과	건강보험	2014-03-05	[도시경관과]2014년 2월분 불법광고물 기간제근로자 급여공제금(기간제 국민 240,000/요양 15,710)	기간제 근로자(불법광고물정비)	2014-03-10	54,330
노인장애인과	국고반환금	2014-03-14	[노인장애인과]2013년 장애인복지시설운영외 17개 사업보조금발생이자	노인장애인과	2014-04-30	4
총무과	건강보험	2014-05-20	[총무과]2014년 5월 일반직 직원 급여공제금(총무과 건강92,405,070/건강과미납1,449,390/요양6,030,870/요양과미납94,550)	총무과(본청)	2014-06-10	47,480
		2014-06-20	[총무과]2014년 6월 총무과 직원 급여공제금(총무과 건강92,752,330/요양6,053,460)	총무과(본청)	2014-07-10	950
합계						473,924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947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 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19.11.06. ~ 2019.11.20.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9.11.20.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소유주 미상 이륜차 13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6)

2019년 11월 06일

남 동 구 청 장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명령서	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19-00250	번호판없음	미운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간석동 37-488 철술의 집 뒷골목	2019.09.03.	기전산업폐차사업소	032-814-4400
2	2019-00297	번호판없음	미운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간석1동 510-6 실신회집 앞 인도	2019.08.29	기전산업폐차사업소	032-814-4400
3	2019-00324	번호판없음	미운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만수3동 서판로53번길 46 빌라 옆 앞미늘 쪽 문 앞	2019.08.06	폐서출폐차사업소	032-442-6660
4	2019-00354	번호판없음	미운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간석1동 318-6 에스타워 주차장 입구 도로변	2019.08.13	기전산업폐차사업소	032-814-4400
5	2019-00389	번호판없음	미운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장도로 37 장메이미기 건너편	2019.09.16	폐서출폐차사업소	032-442-6660
6	2019-00393	번호판없음	미운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논현남로 2-4푸른마트 뒤(해오름빌딩 뒤)	2019.09.16	폐서출폐차사업소	032-442-6660
7	2019-00405	번호판없음	미운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석정로580번길 20(도배아저씨)맞은편,	2019.09.25	기전산업폐차사업소	032-814-4400
8	2019-00409	번호판없음	미운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논현동111-154 백악관모텔앞	2019.09.19	기전산업폐차사업소	032-814-4400
9	2019-00410	번호판없음	미운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논현동679-1 SJC(자인 호텔 뒤	2019.10.02	폐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10	2019-00419	번호판없음	미운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남촌동198-5(큰방죽사거리)	2019.10.07.	폐서출폐차사업소	032-442-6660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관 리 번호	2019-0025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9.03.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92 공원춘경로당 옆 골목 끝(간석로 92-4 이화그린빌라 1동 옆)
	2019-0029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8.29.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510-6 싱싱회집 앞 인도
	2019-0032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8.06. ○ 보관장소 : (주)서울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3동 서판로53번길 46, 빌라 옆 알미늄 쪽문 앞
	2019-0035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8.13.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318-6 에스타워 주차장 입구 도로변
	2019-0038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9.16. ○ 보관장소 : (주)서울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37 장어이야기 건너편/장기방치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19-0039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9.16. ○ 보관장소 : (주)서울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2-4푸른마트 뒤(해오름빌딩 뒤)
	2019-0040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9.25.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80번길 20(도배아저씨)맞은편
	2019-0040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3대)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09.19.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111-154 백악관모텔앞
	2019-0041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2대)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10.02. ○ 보관장소 : (주)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679-1 SJ디자인 호텔 뒤
	2019-0041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견 인 일 : 2019.10.02. ○ 보관장소 : (주)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198-5 (큰방죽사거리)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948호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에 따른 설치대상자 선정 공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 마목 10),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11. 7.

남 동 구 청 장

제1조(목적)

본 공고는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를 위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고시」[남동구고시 2019-81(2019.6.28.)호] 중 금회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설치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1. “배치계획”이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체 국도·광역시도 간선도로변에 주유소를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치노선”이란 “배치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국도·광역시도 간선도로 중 주유소를 배치할 수 있는 노선을 말한다.
3. “배치정수”란 “배치계획”에 따라 지정된 “배치노선”에 설치할 수 있는 주유소 수량을 말한다.
4. “허가권자”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금회 배치노선)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고시」[남동구고시 2019-81(2019.6.28.)호] 중 금회 주유소 설치대상자 배치노선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 기준)

금회 주유소 설치대상자 배치노선에 주유소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유소 설치 목적의 행위허가 허가 신청 전에 이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설치대상자로 선정 받아야 하며 선정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지정당시거주자”이어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나.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 나) 및 라) 규정을 따른다.

② 입지기준

가. 신청지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9항 및 「시행령」 제22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 그 주변지역에 생태계 파괴 및 훼손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역사적 · 문화적 ·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임상이 양호한 임야나 우량농지는 제외한다.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차량진출입로 불허구간에 해당하는 구간,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결정 또는 진행 중인 지역,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간은 신청지에서 제외한다.

다. 자연훼손 및 지형변화(절·성토 최대 3m 초과, 토지의 평균경사도 17도 이상)가 큰 지역과 교량 및 고가차도, 터널구간, 그리고 터널 출입구에서 500m 이내 구간은 신청지에서 제외한다.

라. 그 외 지형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및 타 법률에 따라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신청지에서 제외하며, 배치노선 상에 설치되는 주유소는 그 차량 진출입이 해당 노선 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바. 토지는 자기소유 또는 임대사용 할 수 있다.

1) 본 공고에 의한 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일 이전까지 신청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이 완결된 토지는 자기 소유의 토지로 본다.

2) 임대 토지는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아야 한다.

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에 의거 설치된 기존의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폐지하고 주유소로 용도변경하여 신청할 수 없다.

아. 공동주택, 의료시설(약국 제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으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남동구 고시 제2018-8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유소 ·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직선거리 이내는 신청할 수 없다.

자.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신청지에서 제외한다.

③ 시설기준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남동구 고시 제2018-8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유소 ·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붙임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련 참고 내용” 참조)

나. 주유소의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 「도로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며,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적합하게 작성한 세부계획서를 바탕으로 도로점용허가 기준과 해당 점용시설 주변도로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붙임 2 “도로법 관련 참고 내용” 참조)

제5조(타법과의 관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도로법, 산림기본법, 학교보건법, 농지법, 하천법, 환경관계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남동구 및 인천시 시·구 주유소 ·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금회 주유소 설치대상자 등록신청 및 처리방법)

- ① 금회 설치대상자 배치노선에 주유소 등록신청은 [별표2],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구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은 주민등록등본 상 1세대 당 1건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를 달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③ 타인토지로 동일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공증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
- ④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대상자 등록신청은 서류검토 후 적정 등록 신청자에 한하여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⑥항의 선정순위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 순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별표3]의 추천요령에 의거 처리한다.
- ⑤ ⑥항의 선정순위 및 [별표3]의 추천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 배치계획 및 관련법령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선정이 취소되거나 설치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하는 주유소 잔여 배치정수의 경우, ⑥항의

선정순위 및 [별표3]의 주첨 우선순위의 다음 순위 신청자를 설치대상자로 선정한다.

⑥ 설치대상자 선정 순위

1순위 : 자기 소유의 토지이며 지목이 대지, 잡종지 등 별도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2순위 : 자기 소유의 토지이며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3순위 : 타인 소유의 토지이며 지목이 대지, 잡종지 등 별도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4순위 : 타인 소유의 토지이며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⑦ 공고기간 : 2019. 11. 7. ~ 2019. 12. 1. (25일간)

⑧ 접수기간 : 2019. 12. 2. ~ 2019. 12. 6. 18:00까지 (5일간)

⑨ 신청기간 중에 신청 접수자 및 선정자가 없는 경우, 설치대상자 선정 모집 공고를 다시 공고하여 신청접수를 받아 처리 할 수 있다.

⑩ 사전 신청이나 접수기간이 경과된 후 구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한 자는 이 공고문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한 것으로 보고 무효 처리한다.

제7조 (용도변경금지 등)

1. 본 공고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주유소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행위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설치한 후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유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현 소유자 및 신청자가 주유소(부대시설을 포함)를 완전히 철거하고, 부지의 토지 상태를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목 등의 토지 공부사항도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명의변경 금지)

1. 본 공고에 따라 설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유소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2.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명의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① 본 공고문에 해석 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구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② 행위허가 승인처리 후 1년 이내에 주유소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 ③ 선정된 주유소 설치대상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득한 후 「개발제한구역법」 및 관련 법규에 적법할 경우 주유소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남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접수기간으로부터 설치대상자 선정일까지의 기일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문의처 도시관리과 그린벨트팀 (☎ 032-453-2970) 생활경제과 친환경에너지팀 (☎ 032-453-6120)

【별표 1】

금회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대상자 배치노선

☐ 금회 설치대상자 배치노선

연번	배치노선 명 (해당 도로)	구 간 현 황			연 장	주유소 배치정수	비 고
		구 간	시 점	종 점			
1	비류대로	남측	남촌동 625-62	논현동 1-30	4.1km	1	금회 공고

☐ 금회 설치대상자 배치노선도



※ 공통사항

-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구간은 주유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간은 주유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간은 주유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자연훼손 및 지형변화(절·성토 최대 3m 초과, 토지의 평균경사도 17도 이상)가 큰 곳은 주유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교량 및 고가차도, 터널구간은 주유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터널구간의 출입구에서 500m 이내 구간은 주유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그 외 지형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및 타 법률에 따라 주유소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주유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배치노선 상에 설치되는 주유소는 그 차량 진출입이 해당 노선 상에서 이루어져야 함
-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이 공동주택, 의료시설(약국 제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로부터 직선거리로 25미터 이하 구간은 제외
-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하 구간은 제외

【별표 2】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신청자격 및 증명서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주유소 신청자격	확 인 기 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 ¹⁾ 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 초본·등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 ②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 주민등록 초본·등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① 지정당시 거주자 심사요청서(별지2) ② 생업을 위한 거주사유 증빙자료 ① 지정당시 거주자 심사요청서(별지2) ② 대상 취학생의 주민등록 초본·등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대상 취학생의 졸업 증명서 및 학적부 사본 등 증빙자료

【별표 3】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대상자 동일 선정순위자 우선순위 추첨 요령

구 분	추 첨 요 령	비 고
1. 추첨장소 입실제한	○ 민원접수 1건당 신청인(또는 대리인) 1인만 입실 ① 지참서류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기타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의 경우) ○ 담당공무원(명찰 또는 공무원증 패용) ○ 필요시 경찰관 또는 청원경찰 1~2명 입실	
2. 추첨권 부여	○ 추첨권자 : 신청인 또는 대리인 ○ 지참서류 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기타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②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③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의 경우)	
3. 추첨방법	○ 추첨순위 추첨 ① 추첨함에 노선별 동일순위자 수 만큼 순위를 번호별로 기재한 추첨순위 결정용지를 담당공무원이 투입 ② 민원서류 접수 순서대로 담당공무원이 호명하여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각자 1매씩 추첨 ③ 신청인(또는 대리인)은 추첨순위 결정용지에 주소, 성명 서명 후 임시보관 ○ 우선순위 결정 추첨 ① 추첨함에 노선별 동일순위자 수 만큼 순위를 번호별로 기재한 우선순위 결정용지를 담당공무원이 투입 ② 추첨순위 순서대로 담당공무원이 신청인(또는 대리인) 번호 호명 ③ 담당공무원이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서명된 추첨순위 결정용지를 확인 및 회수 후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우선순위 결정용지를 각자 1매씩 추첨 ④ 신청인(또는 대리인)은 추첨된 우선순위 결정용지에 주소, 성명, 노선명, 신청지번, 전화번호 기재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⑤ 우선순위 결정 추첨 결과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명부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지	동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시설규모(지하 석유저장시설의 건설 및 보유계획서, 주유기 명세서 공중화장실 건설계획서), 운영, 안전관리, 사업시행 예정일 기재). 2. 지적도 및 위치도(사업소 위치를 표시한 것) 3. 등기부등본(토지) 4. 장기 임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신청하는 경우) 5. 주유소 시설 배치계획(도로점용계획 포함) 도면 및 공사계획도면(대지 종·횡단면도), 현황실측도 6. 주변상황(공동주택, 의료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어린이집의 이격거리 등) 표시도면 7. 지정당시 거주자 확인기준 서류(별표2 참조) 및 심사서류(별지2호 서식) 8.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가 주유소를 최초 시행하는 것에 대한 확인서(별지3호 서식)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 .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지정당시 거주자 심사요청서

신청인			
항목			
본적			
현주소			
개발제한구역 내 최초거주	일자		
	주소		
구역 외 거주기간		사 유	

2019. . .

제출자 성명 : (인)
주소 :

남동구청장 귀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가 주유소를 최초 시행하는 것에 대한 확인서

상기 본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로서 사업신청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번지 외 필지)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를 최초 시행하기 위하여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거짓이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 . .

제출자 성 명 : (인)
주민번호 :
연 락 처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

【붙임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련 참고 내용】

[생활경제과 협의 내용]

[별표 2] <개정 2018. 4. 30.>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

(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

1.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

가. 일반대리점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수송장비	7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5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2) 자본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비고

1.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을 하기 위하여 이 영에 따른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선박급유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나. 용제대리점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수송장비	15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2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2) 자본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비고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시·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 주유소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서울특별시	그 밖의 지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주유기 다) 공중화장실	4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1대 이상일 것 1개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주유소 (2) 주유소의 경계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정한다)의 출입문이 있는 주유소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설치하여 선박에 주유하는 주유소(「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1대 이상일 것 1개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주유소 (2) 주유소의 경계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정한다)의 출입문이 있는 주유소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설치하여 선박에 주유하는 주유소(「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
2) 그 밖의 사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사정, 환경여건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에 한정하여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1)의 거리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없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와 주유소 간 거리기준 (2)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도로·교통·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주유소 입지·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기준	

라. 용제판매소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전국
1) 시설기준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저장소를 말한다) 또는 취급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및 제4호의 취급소를 말한다)일 것
2) 자본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마.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 요건 : 출자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바.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전국
1) 저장시설	4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2) 수송장비	1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비고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시·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

가.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수송장비	15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2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2) 자본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비고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시·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나.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전국
---------	----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주유기 다) 공중화장실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1대 이상일 것 1개 이상일 것. 다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주유소이거나 주유소의 경계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정한다)의 출입문이 있는 주유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의 사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사정, 환경여건 등 지역실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정하여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제1호의 거리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없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와 주유소 간 거리기준 2.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도로·교통·건축 관련 법령에 근거한 주유소 입지·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기준

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전국
저장시설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저장시설일 것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8-8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별표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의 등록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8. 6.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유소·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원활한 수급을 통한 주민의 편익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요건)

①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이 가능한 대상지역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②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환경여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환경여건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는 다음 시설 등과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공동주택, 의료시설(약국 제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로부터 25미터 이상

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50미터 이상

③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36조제2항 [별표 2]에 의한 주유소 등록요건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공중화장실은 1개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상 설치하고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신청 및 등록)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등록신청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등록을 받은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는 이 고시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붙임 2】

【도로법 관련 참고 내용】

[건설과 협의 내용]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34호, 2019. 3. 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9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제6장 도로의 점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5. 8. 11., 2017. 12. 5.>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 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 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케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갓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부칙 <제29634호, 2019. 3. 1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제2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통혼잡 실태 등의 조사
2.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⑤부터 ⑧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 20.] [인천광역시조례 제6089호, 2019. 2. 2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91조와 관련하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보행에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4. “허가권자”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수·구청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도구역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기준) ①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는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입구를 분리하여 2개소까지 설치 할 수 있다.

1. 주유소 및 주차장 등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2개소 설치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② 횡단차도의 설치 시에는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도로의 손괴(損壞)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10일까지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5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허가권자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7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허가권자가 공사완공 후 7일까지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까지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02-20 조례 제6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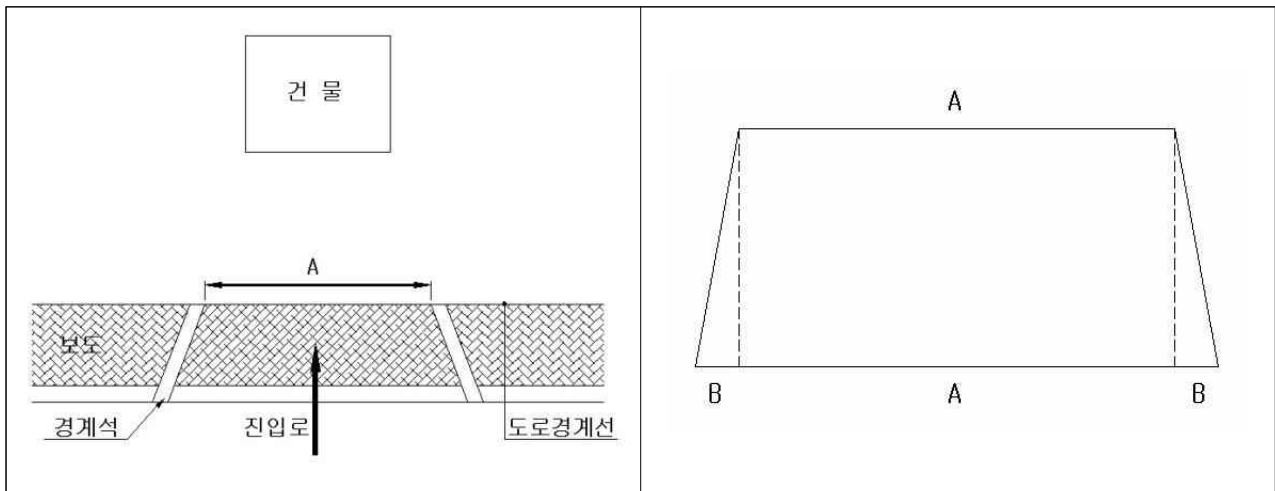
[별표] <개정 2019-02-20>

시 공 기 준

(1)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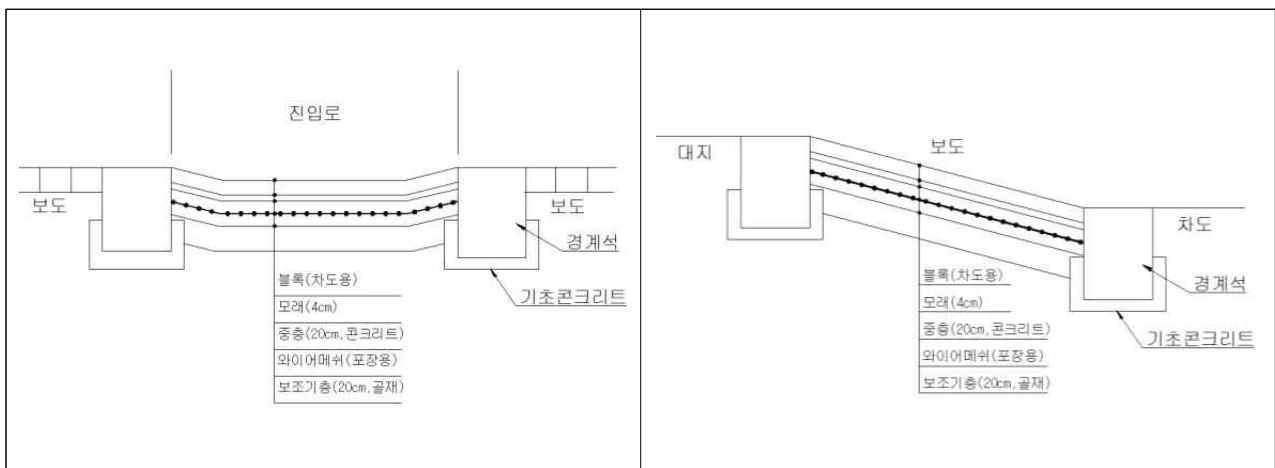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

- A : 도로폭 15m 미만 - 5m이하, 도로폭 15m 이상 - 10m이하
- B : A 의 10% 이하



(2) 단면도

가. 블록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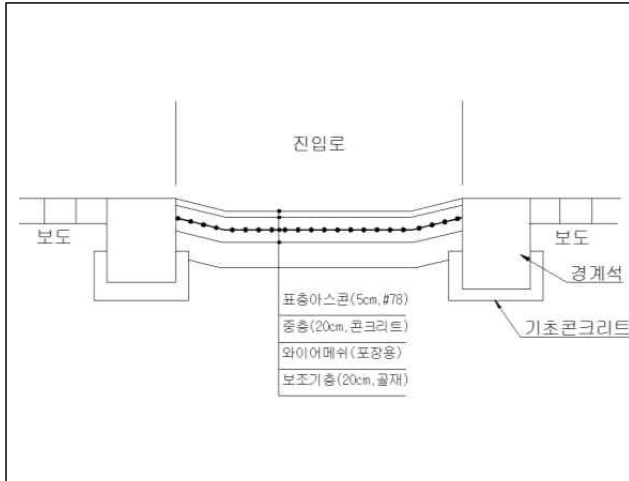


[표준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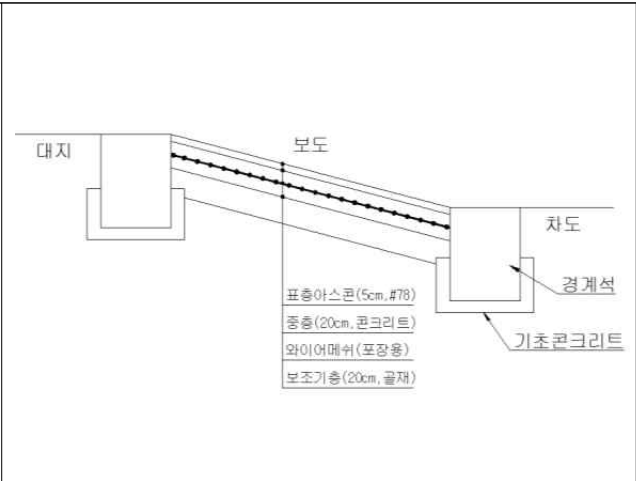
[횡단면]

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시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도블럭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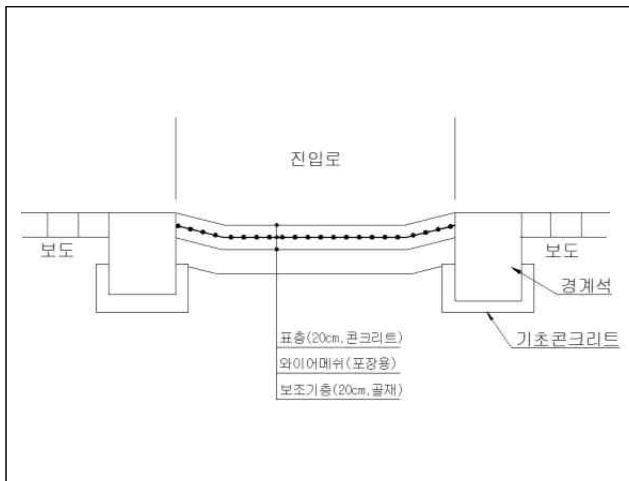


[표준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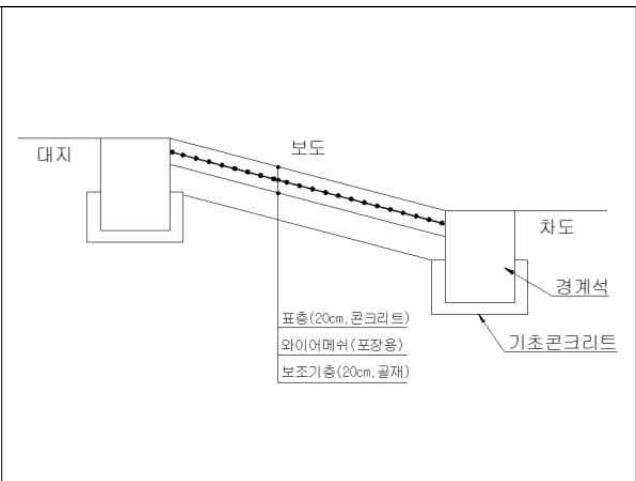


[횡단면]

다. 콘크리트 시공



[표준단면]



[횡단면]

□ 도로점용 허가조건(차량출입시설)

1. 도로점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발시 도로법 제72조에 의한 변상금 및 도로법 제117조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료 산출식 : 점용면적×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0.02×12/12년】
3. 설치위치를 임의대로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설계서와 일치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별표]시공기준에 의할 것】
4. 권리의무의 승계시 승계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도로법 제10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50만원이하)가 부과됩니다.
5. 도로관리청의 공공사업 또는 필요시에는 시설물에 대하여 이전(설) 및 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6.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사고 및 유지관리는 점용자가 책임져야 하며, 도로점용(인도포함)으로 인한 도로파손시 원상복구하고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7. 점용구간내 지장물(전주, 맨홀, 도시가스, 통신관로, 가로수목)은 진입로 설치시 까지 관계기관 및 우리구(공원녹지과)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8. 허가기간 만료 후 도로점용 공사완료 확인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허가조건 미이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없이 도로부지내 시설물 설치시 관련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10. 도로점용 허가 받은 구역 외, 공사 중에 훼손시킨 인접 보도 및 도로에 대한 원상복구 미 이행시 점용허가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 해당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1> 광역권별 관리계획 수립(변경) 행정구역에 표기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임.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에 따른 설치대상자 선정 공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 마목 10),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남 동 구 청 장

제1조(목적)

본 공고는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설치를 위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 변경고시」[남동구고시 제2019-82(2019.6.28.)호] 중 금회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설치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1. “배치계획”이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체 국도·광역시도 간선도로변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치노선”이란 “배치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국도·광역시도 간선도로 중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배치할 수 있는 노선을 말한다.
3. “배치정수”란 “배치계획”에 따라 지정된 “배치노선”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수량을 말한다.
4. “배치지점”이란 “배치계획”에 따라 지정된 “배치노선”에 설치되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위치를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배치계획에 포함한다.
5. “허가권자”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금회 배치노선)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 변경고시」[남동구고시 제2019-82(2019.6.28.)호] 중 금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대상자 배치노선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기준)

금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대상자 배치노선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와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 나) 규정을 따라 도심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전하여 해당 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충전소 설치목적의 행위허가 허가 신청 전에 이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설치대상자로 선정 받아야 하며 선정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자격

- 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지정당시거주자”이거나, 도심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전하여 해당 사업자로,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 가), 나) 및 라) 규정을 따른다.

② 입지기준

- 가. 신청지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9항 및 「시행령」 제22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 그 주변지역에 생태계 파괴 및 훼손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임상이 양호한 임야나 우량농지는 제외한다.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차량진출입로 불허구간에 해당하는 구간,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결정 또는 진행 중인 지역,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간은 신청지에서 제외한다.

다. 자연훼손 및 지형변화(절·성토 최대 3m 초과, 토지의 평균경사도 17도 이상)가 큰 지역과 교량 및 고가차도, 터널구간, 그리고 터널 출입구에서 500m 이내 구간은 신청지에서 제외한다.

라. 그 외 지형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및 타 법률에 따라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신청지에서 제외하며, 배치노선 상에 설치되는 충전소는 그 차량 진출입이 해당 노선 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 1천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바. 토지는 자기소유 또는 임대사용 할 수 있다.

1) 본 공고에 의한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일 이전까지 신청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이 완결된 토지는 자기 소유의 토지로 본다.

2) 임대 토지는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아야 한다.

사.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 배치계획에 의거 설치된 기존의 주유소를 폐지하고 충전소로 용도변경하여 신청할 수 없다.

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의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신청지에서 제외(다만 신청지가 상대보호구역일 때,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일 이전까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로부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지 않음)한다.

자. 충전소의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 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 및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차.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신청지에서 제외한다.

③ 시설기준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붙임 1 “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참고 내용” 참조)

나. 충전소의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 「도로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며,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적합하게 작성한 세부계획서를 바탕으로 도로점용허가 기준과 해당 점용시설 주변도로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붙임 2 “도로법 관련 참고 내용” 참조)

제5조(타법과의 관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도로법, 산림기본법, 학교보건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하천법, 환경관계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남동구 및 인천시 시·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금회 충전소 설치대상자 등록신청 및 처리방법)

- ① 금회 설치대상자 배치노선에 충전소 설치대상자 등록신청은 [별표2],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구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은 주민등록등본 상 1세대 당 1건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를 달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③ 타인토지로 동일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공증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
- ④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설치대상자 등록신청은 서류검토 후 적정 등록 신청자에 한하여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⑥항의 선정순위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순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별표3]의 추천요령에 의거 처리한다.
- ⑤ ⑥항의 선정순위 및 [별표3]의 추천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 배치계획 및 관련법령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선정이 취소되거나 설치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하는 충전소 잔여 배치정수의 경우, ⑥항의 선정순위 및 [별표3]의 추천 우선순위의 다음 순위 신청자를 설치대상자로 선정한다.

⑥ 설치대상자 선정순위

1순위 : 도심 내 기존 충전소를 운영하는 자가 기존의 충전소를 폐쇄하고 개발

제한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이 경우 폐쇄된 충전소 부지에 재설치 불가)

2순위 : 자기 소유의 토지이며 지목이 대지, 잡종지 등 별도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3순위 : 자기 소유의 토지이며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4순위 : 타인 소유의 토지이며 지목이 대지, 잡종지 등 별도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5순위 : 타인 소유의 토지이며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⑦ 공람기간 : 2019. 11. 7. ~ 2019. 12. 1. (25일간)

⑧ 접수기간 : 2019. 12. 2. ~ 2019. 12. 6. 18:00까지 (5일간)

⑨ 신청기간 중에 신청 접수자 및 선정자가 없는 경우, 설치대상자 선정 모집 공고를 다시 공고하여 신청접수를 받아 처리 할 수 있다.

⑩ 사전 신청이나 접수기간이 경과된 후 구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한 자는 이 공고문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한 것으로 보고 무효 처리한다.

제7조 (용도변경금지 등)

1. 본 공고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충전소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행위허가를 받아 충전소를 설치한 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충전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현 소유자 및 신청자가 충전소(부대시설을 포함)를 완전히 철거하고, 부지의 토지 상태를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목 등의 토지 공부사항도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명의변경 금지)

1. 본 공고에 따라 설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전소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2.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명의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 ① 본 공고문에 해석 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구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② 행위허가 승인처리 후 1년 이내에 충전소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 ③ 충전소 설치대상 선정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한 득한 후 「개발제한구역법」 및 관련 법규에 적법할 경우 충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남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접수기간으로부터 설치대상자 선정일까지의 기일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문 의 처 도시관리과 그린벨트팀 (☎ 032-453-2970)
생활경제과 친환경에너지팀 (☎ 032-453-6120)

【별표 1】

금회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대상자 배치노선

□ 금회 설치대상자 배치노선

연번	배치노선 명 (해당 도로)	구 간 현 황		연장	충전소 배치정수	비 고
		시 점	종 점			
1	호구포로(동측)-비류대로(남측)-소래로(서측)	논현동 513-3	논현동 33-151	4.2km	1	금회 공고

□ 금회 설치대상자 배치노선도



※ 공통사항

-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자연훼손 및 지형변화(절·성토 최대 3m 초과, 토지의 평균경사도 17도 이상)가 큰 곳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교량 및 고가차도, 터널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터널구간의 출입구에서 500m 이내 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그 외 지형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및 타 법률에 따라 충전소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배치노선 상에 설치되는 충전소는 그 차량 진출입이 해당 노선 상에서 이루어져야 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포함)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다만 신청지가 상대보호구역일 때,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로부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지 않음)

【별표 2】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신청자격 및 증명서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동 시행령 별표1 5호 마-10)

충전소 신청자격	확 인 기 준
○ 도심의 기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폐쇄하고 이전하는 경우	○ 남동구 관내 충전소 운영자에 한한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u>해당 개발 제한구역</u> ²⁾ 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 초본·등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 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 ②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 주민등록 초본·등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① 지정당시 거주자 심사요청서(별지2) ② 생업을 위한 거주사유 증빙자료 ① 지정당시 거주자 심사요청서(별지2) ② 대상 취학생의 주민등록 초본·등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대상 취학생의 졸업 증명서 및 학적부 사본 등 증빙자료

【별표 3】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대상자
동일 선정순위자 우선순위 추첨 요령

구 분	추첨요령	비고
1. 추첨장소 입실제한	○ 민원접수 1건당 신청인(또는 대리인) 1인만 입실 ① 지참서류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기타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의 경우) ○ 담당공무원(명찰 또는 공무원증 패용) ○ 필요시 경찰관 또는 청원경찰 1~2명 입실	
2. 추첨권 부여	○ 추첨권자 : 신청인 또는 대리인 ○ 지참서류 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기타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②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③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의 경우)	
3. 추첨방법	○ 추첨순위 추첨 ① 추첨함에 노선별 동일순위자 수 만큼 순위를 번호별로 기재한 추첨순위 결정용지를 담당공무원이 투입 ② 민원서류 접수 순서대로 담당공무원이 호명하여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각자 1매씩 추첨 ③ 신청인(또는 대리인)은 추첨순위 결정용지에 주소, 성명 서명 후 임시보관 ○ 우선순위 결정 추첨 ① 추첨함에 노선별 동일순위자 수 만큼 순위를 번호별로 기재한 우선순위 결정용지를 담당공무원이 투입 ② 추첨순위 순서대로 담당공무원이 신청인(또는 대리인) 번호 호명 ③ 담당공무원이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서명된 추첨순위 결정용지를 확인 및 회수 후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우선순위 결정용지를 각자 1매씩 추첨 ④ 신청인(또는 대리인)은 추첨된 우선순위 결정용지에 주소, 성명, 노선명, 신청지번, 전화번호 기재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⑤ 우선순위 결정 추첨 결과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명부 작성	

【별지 제1호서식】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지	동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목적, 시설규모, 운영, 안전관리, 사업시행 예정일, 재원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기재) 2. 기술검토서 1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3. 지적도 및 위치도(사업소 위치를 표시한 것) 4. 등기부등본(토지) 5. 장기 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신청하는 경우) 6. 충전소 시설 배치계획(도로점용계획 포함) 도면 및 공사계획도면(대지 종·횡단면도), 현황실측도 7. 주변상황(공동주택, 의료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어린이집의 이격거리 등) 표시도면 8. 지정당시 거주자 확인기준 서류(【별표 2】 참조) 및 심사서류(별지2서식) 9.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가 충전소를 최초 시행하는 것에 대한 확인서(별지3서식)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 .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정당시 거주자 심사요청서

신청인			
항목			
본적			
현주소			
개발제한구역 내 최초거주	일자		
	주소		
구역 외 거주기간		사 유	

2019. . .

제출자 성명 : (인)
주소 :

남동구청장 귀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최초 시행하는 것에
대한 확인서

상기 본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로서 사업신청지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번지 외 필지)에 「개발제한구
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
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를 최초 시행하기 위하여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거짓이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설치대상
자 선정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 . .

제출자 성 명 : (인)

주민번호 :

연 락 처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

【붙임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참고 내용】

[생활경제과 협의 검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시행 2019. 3. 26] [법률 제16302호, 2019. 3. 2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4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6302호, 2019. 3.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개정 2018. 12. 3.>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저장탱크·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로 한정한다. 이하 가)·다) 및 바)에서 같다]·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다)부터 마)까지의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와의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만, 충전설비 중 가스라이터용 충전기는 제2호가목1)다)의 거리 이상을 유지한다.

나)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저장설비·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저장능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24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7 m
20톤 초과 30톤 이하	30 m
30톤 초과 40톤 이하	33 m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 m
200톤 초과	39 m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W = 0.9dV$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W = 0.85dV$

W: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kg)

d: 상용온도에서의 액화석유가스 비중(단위: kg/L)

V: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L)

2. 동일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가스라이터용 충전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라)에서 같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것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2) 충전설비 중 충전기는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충전기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을 유지할 것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것

(1)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2)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2.5m 이상을 유지할 것

바)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제7조제1항제5호·제7호 및 제8호(충전기의 수량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만을 말한다)에 따른 변경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안전거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1)부터 (3)까지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에 따른 안전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 (1) 충전시설 변경 전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이 경우 안전성평가의 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신청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 (2) 안전성평가 결과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 변경·용량 증가 또는 수량 증가로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 (3)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변경할 것
- (4) 저장설비와 충전설비(전용공업지역에 있는 저장설비와 충전설비는 제외한다)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서 정한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저장설비가 지상에 설치된 저장능력 30톤을 초과하는 용기충전시설의 충전설비는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저장능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17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 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 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 m
40톤 초과	30 m

사)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로서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이 유지되는 시설만을 말한다)은 다음 (1)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1) 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 (가) 안전성평가는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나) 안전성평가 결과 보호시설 설치 후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 (2)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보완할 것

아)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기초기준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기초는 지반 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미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받침대(받침대가 없는 저장탱크에는 그 아랫부분)는 같은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기준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 그 받침대 및 부속설비는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열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온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저장탱크를 말한다)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다)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의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의 저장탱크는 그 저장탱크 설치일 안에서의 가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지하에 묻을 것.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마) 처리능력은 연간 1만톤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1만톤 이상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소형용기와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

(2) 1984년 8월 28일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경우(저장설비의 처리 능력을 줄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은 마)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1(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분의 1) 이상일 것

사)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소형저장탱크는 지상의 수평한 장소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아)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수는 6기 이하로 하고 충전 질량의 합계는 5천kg 미만인 되도록 하는 등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하게 설치할 것

자)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세이프티 커플링과 소화설비의 재료, 구조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차) 저장탱크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과충전 경보 또는 방지장치, 폭발방지장치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 부압과피방지 조치 및 방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한 경우에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물분무장치(살수장치를 포함한다)나 소화전을 설치하는 저장탱크

(2) 저온저장탱크[이중각(二重殼) 단열구조의 것을 말한다]로서 그 단열재의 두께가 그 저장탱크 주변의 화재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된 저장탱크

(3)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저장탱크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액화석유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강도·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충전시설에는 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충전기·잔량측정기·자동계량기로 구성된 충전설비와 로딩암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관 이음매와 밸브를 포함한다) 안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재료로 되어 있을 것

나) 배관의 강도·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의 접합은 액화석유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라) 배관은 신축(伸縮) 등으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가 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마) 배관은 수송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과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배관의 안전을 위하여 배관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색하고 표시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에는 그 설비 및 배관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한 경우 즉시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충전기 주위, 저장설비실 및 가스설비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檢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다만, 액체 상태의 액화석유가스를 옮겨 넣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대신할 수 있다.

라) 위험장소 안에 있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 성능을 갖춘 것일 것

- 마)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바)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의 바깥 면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비와 배관이 설치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사)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아) 용기 보관장소에는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 가)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능력(2개 이상의 탱크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들의 저장능력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1천톤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체 상태의 액화석유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나) 지상에 설치된 저장탱크와 가스충전장소 사이에는 가스 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다) 저장탱크(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스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이입·충전장소에는 소화를 위하여 살수장치, 물분무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화능력이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 라) 배관에는 온도상승 방지조치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것

8) 부대설비기준

- 가) 충전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사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설비·비상전력설비·통신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 나) 충전시설에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 설치실과 충전용기 보관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가스설비 설치실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충전장소와 저장설비(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는 불연재료나 난연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하며, 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호 유리는 망입유리나 안전유리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 다) 충전된 용기(소형용기는 제외한다) 전체에 대하여 누출을 시험할 수 있는 구조식 장치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용기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잔가스 제거장치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 다만 용기 재검사기관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용기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라) 소형용기 중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집합 또는 납불임용기와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온도에서 가스누출시

험을 할 수 있는 온수시험탱크를 갖추 것

마) 소형용기 중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 충전시설에는 캔밸브[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말한다. 이하 마)에서 같다] 교체를 위하여 캔밸브 교체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캔밸브를 교체하는 경우 그 용기 안의 잔가스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잔가스는 다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충전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바) 충전능력에 맞는 수량의 용기 전용 운반자동차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용기 전용 운반자동차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가로·세로 5cm 이상 크기의 글자로 도색하여 표시할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하여야 한다.

사)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 것

(1) 벌크로리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벌크로리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가로·세로 5cm 이상 크기의 글자로 도색하여 표시할 것.

(2)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

(3) 누출된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고, 벌크로리의 안전을 위한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벌크로리의 주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벌크로리의 저장능력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G = V/C$$

여기에서

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kg)

V: 벌크로리의 내용적(단위: L)

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

저장능력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10톤 이하	17m	12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14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16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18m
40톤 초과	30m	20m

(4) 벌크로리를 2대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각 벌크로리별로 (3)의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하고, (3)의 단서에 따라 벌크로리 주차위치 중심 설정 시 벌크로리 간에는 1m 이상 거리를 두고 각각 벌크로리의 주차위치 중심을 설정한다.

9) 표시기준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10) 그 밖의 기준

가)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1)가) 및 아)에 대하여 시·군·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다) 나)에 따라 1)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거리는 해당 충전소의 충전소 허가신청일과 보호시설에 대한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라)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재검사를 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액화석유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저장시설을 설치·사용할 수 있고, 임시저장시설은 안전하게 설치할 것. 이 경우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7조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임시저장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임시저장시설의 설치·사용에 관한 세부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설비일 것

(2) 집광판 및 그 부속설비는 캐노피의 상부, 건축물의 옥상 등 충전소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집광판, 접속반, 인버터, 분전반 등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거나 폭발위험장소(0종 장소, 1종 장소 및 2종 장소를 말한다)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 가) 저장탱크의 안전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침하 상태를 측정하고, 그 침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 나) 저장탱크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것
- 다) 저장설비실 안으로 등화를 휴대하고 출입할 때에는 방폭형 등화를 휴대할 것
- 라) 가스누출검지기와 휴대용 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 마)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8 m 이내에서는 화기(담뱃불을 포함한다)를 취급하지 않을 것
- 바) 소형저장탱크의 주위 5 m 이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많이 쌓아 두지 않을 것
- 사) 소형저장탱크 주위에 있는 밸브류의 조작은 원칙적으로 수동조작으로 할 것
- 아) 소형저장탱크의 세이프티 커플링의 주밸브는 액봉(液封) 방지를 위하여 항상 열어 둘 것. 다만, 그 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나 긴급 시의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닫아 두어야 한다.
- 자)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가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반드시 지킬 것
- 차) 용기 보관장소에 충전용기를 보관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게 할 것
 - (1) 용기 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을 것
 - (2) 용기 보관장소의 주위 8m(우회거리)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않을 것
 - (3)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 (4) 충전용기(내용적이 5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이나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난폭하게 취급하지 않을 것
 - (5) 용기 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燈火)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 (6) 용기 보관장소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각각 구분해 놓을 것
- 카) 가스설비의 부근에는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 타) 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파) 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연결하려면 그 이음쇠와 연결되는 부분에 잔류응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고, 관이음 또는 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할 것
- 하) 가스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로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1)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 방향(조작스위치로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 상태를 포함한다)을 표시할 것
 - (2)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스의 종류와 방향을 표시할 것
 - (3) 밸브등을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밸브등(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를 채우거나 봉인해 두는 등의 조치를 할 것
 - (4)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 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 거) 가스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하려면 불활성가스를 사용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중에 있는 가스를 방출한 후에 하여야 하고, 온도를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 너) 배관에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 비고 제7호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검사기관 중 액화석유가스 용기 전문검사기관에 보내 폐기할 것

2) 제조 및 충전기준

- 가)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가스의 용량이 상용 온도에서 저장탱크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할 것
-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는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정지할 것. 다만, 저장탱크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사이에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다) 가스를 충전하려면 충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 라) 액화석유가스가 공기 중에 1천분의 1의 비율로 혼합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냄새가 나는 물질(공업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섞어 용기에 충전할 것
- 마)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할 것
- (1)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 둘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청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천L 이상인 것을 말한다)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 (3)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이입할 때에는 배관 접속 부분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입한 후에는 그 배관 안의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4)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5시간 이상 연속하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저장탱크에 접속하지 않을 것

바) 충전설비에서 가스충전작업을 하려면 외부에서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충전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사) 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충전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전할 것

$$G = V/C$$

여기에서

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kg)

V: 용기의 내용적(단위: L)

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

아) 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하여 밸브 또는 충전용 지관을 가열할 필요가 있으면 열습포나 40℃ 이하의 물을 사용할 것

자) 소형용기 중 접합 또는 납땀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에어줄충전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충전하는 가스의 압력과 성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접합 또는 납땀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가) 가스의 압력: 40℃에서 0.52MPa 이하

(나) 가스의 성분: 프로판+ 프로필렌은 10mol% 이하, 부탄+ 부틸렌은 90mol% 이상

(2)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

(가) 가스의 압력: 40℃에서 1.53MPa 이하

(나) 가스의 성분: 프로판+ 프로필렌 90mol% 이상

차)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한 후 과충전된 것은 가스회수장치로 보내 초과량을 회수하고 부족한 양은 재충전할 것

카)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벌크로리 등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고, "화기엄금"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타)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맞게 할 것

(1)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경우 다

음의 안전점검을 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할 것

(가) 외관검사

- ① 제조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용접용기일 것
-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의 상태가 4급에 해당하는 찌힌 흠(긁힌 흠), 부식, 우그러짐 및 화염(전기불꽃)에 의한 흠이 없을 것

(나) 캔밸브와 용기밸브

- ① 캔밸브와 용기밸브는 부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부착연월이 새겨져 있을 것
- ② 사용에 지장이 있는 흠, 주름, 부식 등이 없을 것

(다) 표시사항

충전사업자는 용접용기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이 훼손된 것은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

- (2)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접용기에 부탄가스 또는 프로판가스를 충전할 때마다 그 용접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충전하여야 한다.

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를 것

-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 송출하거나 이입하려면 "가스충전 중"이라 표시하고,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 (2)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정전기를 제거한 후 저장탱크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할 것
- (3)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에는 방폭형 휴대용 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수요자의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를 것

- (1)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소형저장탱크 안의 잔량을 확인한 후 충전할 것
- (2) 충전작업은 수요자가 채용한 안전관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할 것
- (3) 충전 중에는 액면계의 움직임·펌프 등의 작동을 주의·감시하여 과충전 방지 등 작업 중의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 (4) 충전작업이 완료되면 세이프티 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할 것

3) 점검기준

가) 충전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작동 상황을 주기적(충전설비의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충전용기(소형용기는 제외한다) 중 외관이 불량한 용기에 대해서는 가목8)다)에 따른 시설로 누출시험을 실시하고 그 밖의 용기에 대해서는 비눗물을 이용하여 누출시험을 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는 연속공정에 의하여 $55\pm 2^{\circ}\text{C}$ 의 온도조에 60초 이상 통과시키는 누출검사를 모든 용기에 대하여 실시하고, 불합격된 용기는 파기할 것

라) 안전밸브[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과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라)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맨 끝 부분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가목6)가)에 따라 설치 시 설정되는 압력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의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 주기는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 주기로 한다.

마) 가스시설에 설치된 긴급차단장치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 시트의 누출검사 및 작동검사를 하여 누출량이 안전에 지장이 없는 양 이하이고, 작동이 원활하며 확실하게 개폐될 수 있는 작동 기능을 가졌음을 확인할 것

바) 정전기 제거 설비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 기능을 확인할 것

(1) 지상에서의 접지저항치

(2) 지상에서의 접속부의 접속 상태

(3) 지상에서의 절선 부분이나 그 밖의 손상 부분의 유무

사) 물분무장치, 살수장치와 소화전은 매월 1회 이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유지할 것. 다만, 얼어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펌프 구동만으로 통수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아) 슬립 튜브식 액면계의 패킹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교체할 것

자) 충전용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차) 비상전력은 그 기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수리·청소 및 철거 기준

충전시설 중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그 밖의 기준

가) 사업소의 안전관리자는 임시저장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임시저장시설은 사업소의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재검사나 교체공사가 끝나는 즉시 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철거하여야 한다.

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충전하는 충전사업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1)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운반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에 따른 고압가스운반 등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합 또는 납땜용기를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또는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본다.

(2) 충전사업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를 공급하는 대리점 등과 가스사고책임한계, 관리사항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급하여야 한다.

(3) 대리점이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를 공급하려면 식품접객업소등과 가스사고 책임한계, 관리사항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급하여야 하며, 충전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 대상 차량에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사항목
가) 안전성확인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 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라)(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5)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한정함), 5)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6)바)(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과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

	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가)부터 다)까지, 1)마)부터 자)까지, 1)파)·1)거)·2)가)·2)나)·2)라)부터 타)까지, 2)하)·3)가)부터 다)까지, 3)마)부터 아)까지, 3)차)·4)·5)는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 (1) 안전밸브 (2) 긴급차단장치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5) 강제통풍시설 (6)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하여 할 것

진단 분야	진단 항목
가) 일반 분야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 관리 실태, 저장 탱크 운영 실태, 입하·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나) 장치 분야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배관 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 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확인
다) 전기·계장 분야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

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패,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패,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나) 안전성평가는 제5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2.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가. 시설기준

1)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제7조제1항제5호·제7호 및 제8호(충전기의 수량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만을 말한다)에 따른 변경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제1호가목1)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안전거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가) 및 나)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에 따른 안전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가)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능력변경은 사업소 안의 합산 저장능력이 30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그 밖의 사항은 제1호가목1)바)(1)부터 (3)까지에 따를 것

다) 저장설비와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정한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저장능력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10톤 이하	17m	12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14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16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18m
40톤 초과	30m	20m

2)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것

가) 저장설비 저장능력의 총합이 15톤 이상일 것. 이 경우 제1호가목3)마)·바) 및 제3호가목1)에 따른 저장능력 산정 시 산입된 저장능력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나) 로딩암, 충전기, 충전호스, 차양 등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3) 충전 시 자동차의 오발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발진 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충전시설에는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 설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가스설비 설치실과 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의 유리는 망입유리 또는 안전유리로 하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의 벽, 기둥 등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5)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는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충전사업 용도의 건축물이나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가) 충전을 하기 위한 작업장

나) 충전소의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다) 충전소 관계자가 근무하는 대기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용기를 재검사하기 위한 시설

마) 충전소 종사자의 숙소

바) 충전소의 종사자가 이용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식당

사) 비상발전기실 또는 공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창고

아) 자동차 세차를 위한 시설

자)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동판매기와 현금자동지급기

차)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한다)를 위한 작업장

카)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매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소매점을 말한다), 자동차 전시장, 고객휴게실, 휴게음식점, 자동차 영업소 및 일반사무실로서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위치, 구조 등을 갖춘 것

타) 자동차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작업장

파)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량증명업을 위한 작업장

하) 제1호가목10)바)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

6) 5)바)부터 파)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저장설비·가스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을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 8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7) 5)나)·다)·바)·사) 및 차)부터 파)까지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은 500 m²를 초과할 수 없다.

8) 자동차 제조사나 연구소에 설치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는 2)가) 및 5)부터 7)까지의 시설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9)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이 유지되는 시설만을 말한다)은 다음 가)와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1) 안전성평가는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2) 안전성평가 결과 보호시설 설치 후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나)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보완할 것

10)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바)·1)사)·3)마)·3)바)·4)다)·6)아), 8)나)부터 사)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자동차의 엔진을 정지시키도록 운전자에게 권고하여야 하고, 충전이 끝나면 접속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킨 후에 발차시킬 것

2) 충전장의 충전기앞(옆) 노면에 충전할 자동차용 주·정차선과 입구 및 출구 방향을 표시할 것

3)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1)차)·2)자)·2)차)·2)타)·2)파)·2)하)·3)나)·3)다)·5)나)·5)다)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나목 2)사) 및 아)의 "용기"는 "자동차연료용 용기"로 보고, 제1호나목 5)가)의 "제1호나목"은 "제2호나목"으로 본다.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사항목
가) 안전성확인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라)(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

	정함), 5)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한정함). 5)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6)바)(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과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2) 제2호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제1호나목의 1)가)부터 다)까지, 1)마)부터 차)까지, 1)파)·1)거)·2)가)·2)나), 2)라)부터 하)까지, 3)가)부터 다)까지, 3)마)부터 아)까지, 3)차)·4)·5)와 제2호나목1)은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 (1) 안전밸브 (2) 긴급차단장치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5) 강제통풍시설 (6)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하여 할 것

진단 분야	진단 항목
(1) 일반 분야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 관리 실태, 저장탱크 운영 실태, 입하·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2) 장치 분야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배관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 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확인
(3) 전기·계장 분야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나) 안전성평가는 제5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할 때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을 포함한다)

가. 시설기준

-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은 4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에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 소형용기 충전시설 및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시설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지 않는다.
- 2) 마운드형 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제1호가목1)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서 정한 안전거리 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마운드형 저장탱크는 저장설비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 3) 마운드형 저장탱크는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탱크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 4) 마운드형 저장탱크는 제1호가목3)가)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제1호가목3)차)와 관련하여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5) 충전시설에는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 설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가스설비 설치실과 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문의 유리는 망입유리 또는 안전유리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 6) 사업장 밖으로 연장된 배관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된 사업장 밖의 배관기준을 적용한다.
- 7)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로딩암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8)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및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제1호가목[1)바), 3)마)부터 차)까지, 4)다)·6)아)·7)나), 8)나)부터 바)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나)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 제1호가목[1)바), 3)마)부터 차)까지, 4)다)·6)아)·7)나), 8)나)부터 사)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충전이 끝나면 접속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킨 후에 발차할 것

2)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할 것

가)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 둘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청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천L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가스를 충전하거나 그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이입할 때에는 배관 접속 부분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입한 후에는 그 배관 안의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의 교육이수 여부 및 운반책임자의 자격 또는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것

4)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경우 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이송할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할 것

5)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및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제1호나목[1)바)부터 차)까지, 2)마)·2)아)·2)자)·2)타)·3)나)·3)다)·5)나)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나목2)라) 및 사)의 "용기"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보고, 제1호나목5)가)의 "제1호나목"은 "제3호나목"으로 본다.

나)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 제1호나목[1)바)부터 차)까지, 2)마), 2)사)부터 하)까지, 3)나)·3)다)·5)나)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나목"은 "제3호나목"으로 본다.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사항목
가) 안전성확인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라)(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5)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한정함), 5)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6)바)(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과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2) 제3호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제1호나목의 1)가)부터 다)까지, 1)마)부터 차)까지, 1)파)·1)거)·1)너)·2)가)·2)나), 2)라)부터 하)까지, 3)가)부터 다)까지, 3)마)부터 아)까지, 3)차)·4)·5)와 제3호나목1)·3)은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 (1) 안전밸브 (2) 긴급차단장치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5) 강제통풍시설 (6)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하여 할 것

진단 분야	진단 항목
(1) 일반 분야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 관리 실태, 저장탱크 운영 실태, 입하·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2) 장치 분야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배관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 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확인
(3) 전기·계장 분야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나) 안전성평가는 제5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할 때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정) 2010.10.01 조례 제1020호

(일부개정) 2018.03.30 조례 제146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 3.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8. 3. 30)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별표 1 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8. 3. 30)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하며, 충전사업의 변경허가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등의 노후로 인한 증설없는 시설의 변경 및 판매사업과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동일부지 내에서 안전관리 강화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시에는 제외한다.

제4조(허가요건) 법 제5조, 제6조,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끼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로 정하여 허가요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10. 1. 조례 제10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3. 30.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구 분	허 가 요 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폭 16m이상인 도로에 부지 일면의 길이가 20m이상 접할 것. 2.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할 것. 3.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가목1)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거리의 2배를 적용할 것. 4. 충전사업장의 대지 및 저장, 충전설비는 대표자의 소유 또는 임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 경우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락서가 있을 것.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상 설치 가능한 지역 중 허가지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는 용기보관실 38㎡, 사무실은 18㎡, 전용주차면적 46㎡이상을 확보하고, 부지는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설치는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된 건물일 것. (다만, 1종 보호시설 및 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는 설치가 불가능함)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신규허가 시 업소 상호 간 안전거리는 부지경계 간 직선거리 1,000m이상을 유지할 것. 5. 일과 종료 후 가스사고발생에 대비하여 1인 이상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에 상주시킬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간 일정장소에서 야간 근무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 상주시켜야 하며, 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6. 용기보관실의 용도는 관련법상 설치 가능한 용도(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한다.

【붙임 2】

【도로법 관련 참고 내용】

[건설과 협의 검토]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34호, 2019. 3. 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9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제6장 도로의 점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5. 8. 11., 2017. 12. 5.>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 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 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레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부칙 <제29634호, 2019. 3. 1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제2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통혼잡 실태 등의 조사
2.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⑤부터 ⑧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 20.] [인천광역시조례 제6089호, 2019. 2.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91조와 관련하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보행에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4. “허가권자”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수·구청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도구역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기준) ①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는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입구를 분리하여 2개소까지 설치 할 수 있다.

1. 주유소 및 주차장 등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2개소 설치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횡단차도의 설치 시에는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도로의 손괴(損潰)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10일까지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5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허가권자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7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허가권자가 공사완공 후 7일까지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까지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02-20 조례 제608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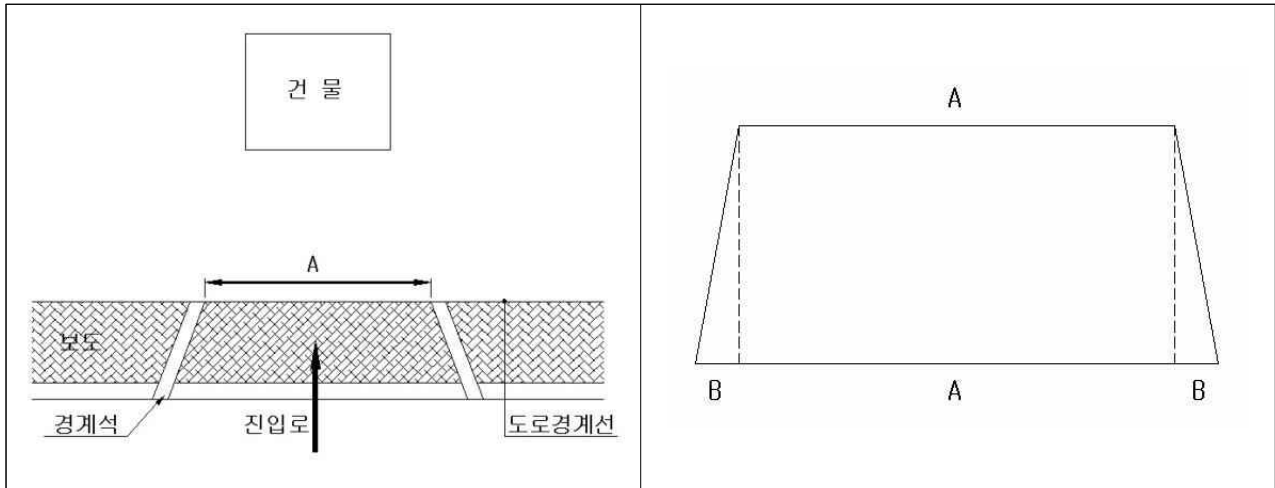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9-02-20>

(1)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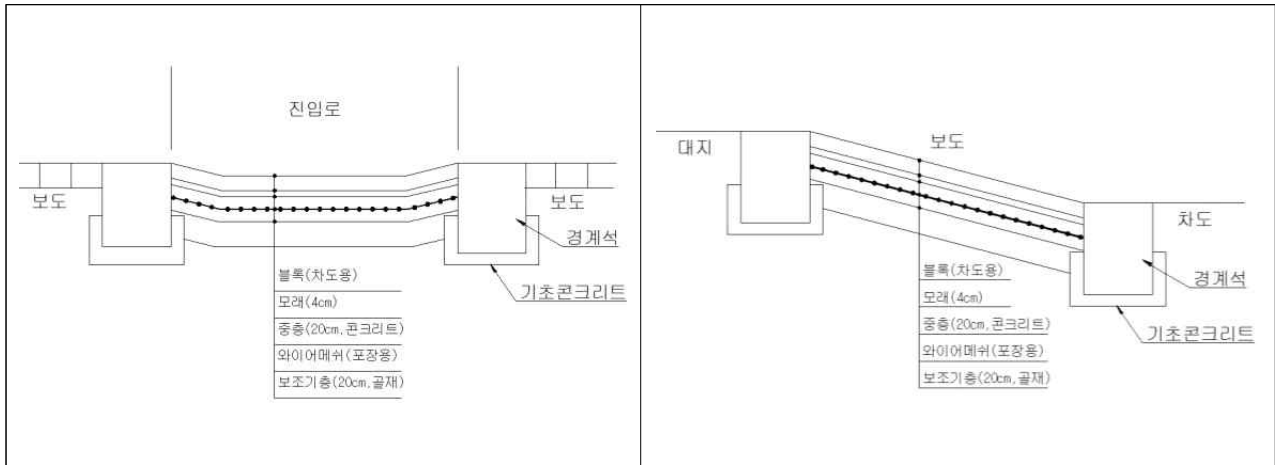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

- A : 도로폭 15m 미만 - 5m이하, 도로폭 15m 이상 - 10m이하
- B : A 의 10% 이하



(2) 단면도

가. 블록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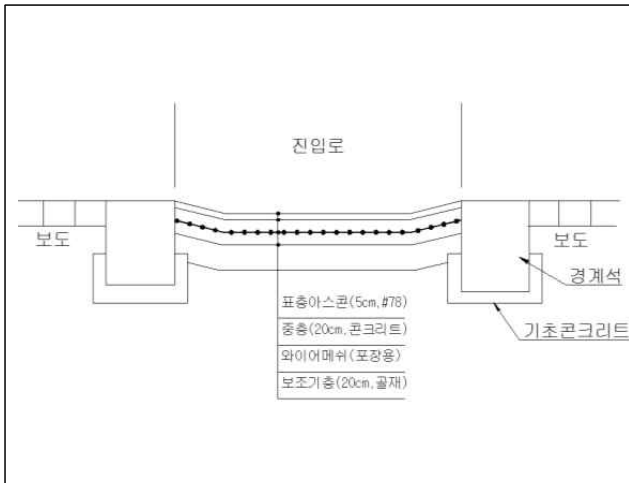
[표준단면]

[횡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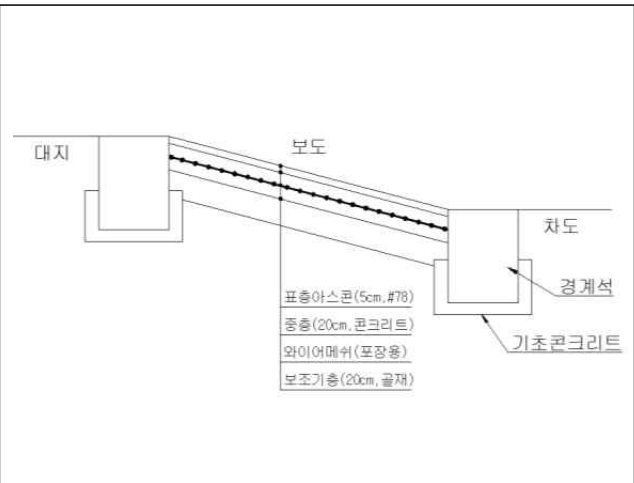
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시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도블럭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

2) 해당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1> 광역권별 관리계획 수립(변경) 행정구역에 표기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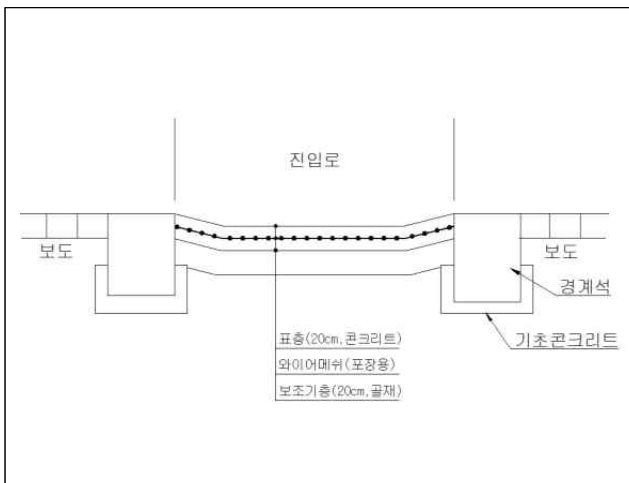


[표준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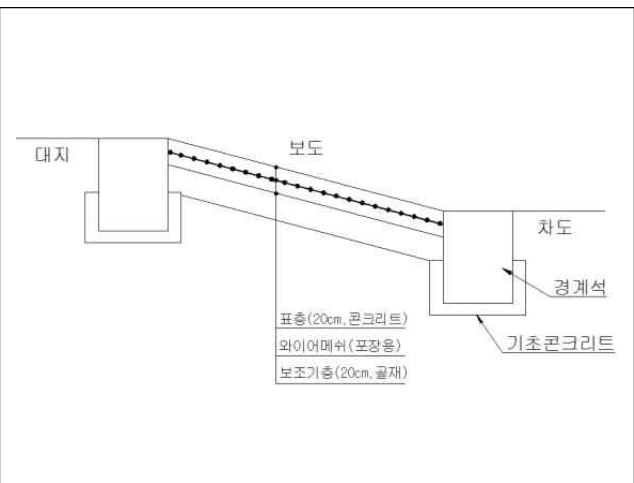


[횡단면]

다. 콘크리트 시공



[표준단면]



[횡단면]

□ 도로점용 허가조건(차량출입시설)

1. 도로점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발시 도로법 제72조에 의한 변상금 및 도로법 제117조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료 산출식 : 점용면적×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0.02×12/12년】
3. 설치위치를 임의대로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설계서와 일치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별표]시공기준에 의할 것】
4. 권리의무의 승계시 승계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도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도로법 제10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50만원이하)가 부과됩니다.

5. 도로관리청의 공공사업 또는 필요시에는 시설물에 대하여 이전(설) 및 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6.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사고 및 유지관리는 점용자가 책임져야 하며, 도로점용(인도포함)으로 인한 도로파손시 원상복구하고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7. 점용구간내 지장물(전주, 맨홀, 도시가스, 통신관로, **가로수목**)은 진입로 설치시 까지 관계기관 및 **우리구(공원녹지과)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8. 허가기간 만료 후 도로점용 공사완료 확인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허가조건 미이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없이 도로부지내 시설물 설치시 관련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10. 도로점용 허가 받은 구역 외, 공사 중에 훼손시킨 인접 보도 및 도로에 대한 원상복구 미 이행시 점용허가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5.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남동구 관내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 위원회 설치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9. 11. 5 ~ 11. 12. (7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남동구 관내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

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의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남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교육·훈련 사업
4. 인권 및 권리보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7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실무협의체에서 대신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을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7조(실태조사) 및 제9조(지원사업 등)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경우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남동구의회 의원 정재호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3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6조 ☐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1. 23.> 1. 법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8. 4.]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전문개정 2011. 8. 4.]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③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9-82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9. 11. 18.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9. 11. 01. ~ 2019. 11. 15.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휴 게 음식점	2012- 0199985	잇브레드 (Eat bread)	왕○명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 331, 1층 (도림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5.03.17	2019.11.18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9. 11. 15.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19. 11. 01.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9-83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11. 5.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제 목 : 영업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19. 11. 5. ~ 2019. 11. 19.
3. 당 사 자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유흥주점	1996-0199336	뉴리본	배○호	남동대로916번길 31, 지하1층 (간석동)	-

4. 처분내용 : 영업소 허가 취소
5. 사 유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032-453-2623)
 - 청문일시 : 2019. 12. 3.(화)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제자: 남동구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장
8.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식품허가팀 032-453-2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9-84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9. 11. 21.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9. 11. 06. ~ 2019. 11. 20.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 반 음식점	2017- 0200543	영산강민물장어	김○정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467번길 28, 1층전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09.23	2019.11.21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9. 11. 20.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19. 11. 06.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19-148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16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11. 01.

남 동 구 청 장

1. 지정내역

구 분	지 번	지적면적 (㎡)	지정면적 (㎡)	비고
사방 사업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 산1-2외 6필지	475,272	2,460	계류보전

※ 상세내역 불임 1 참조

2.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3. 지정도면 : 불임2 참조

4.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사방지 지정도면 원본은 남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공원녹지과(☎032-453-28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1. 사방지 지정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도면 1부. 끝.

번호: 2019년도 제1호

사방지지정구역도면(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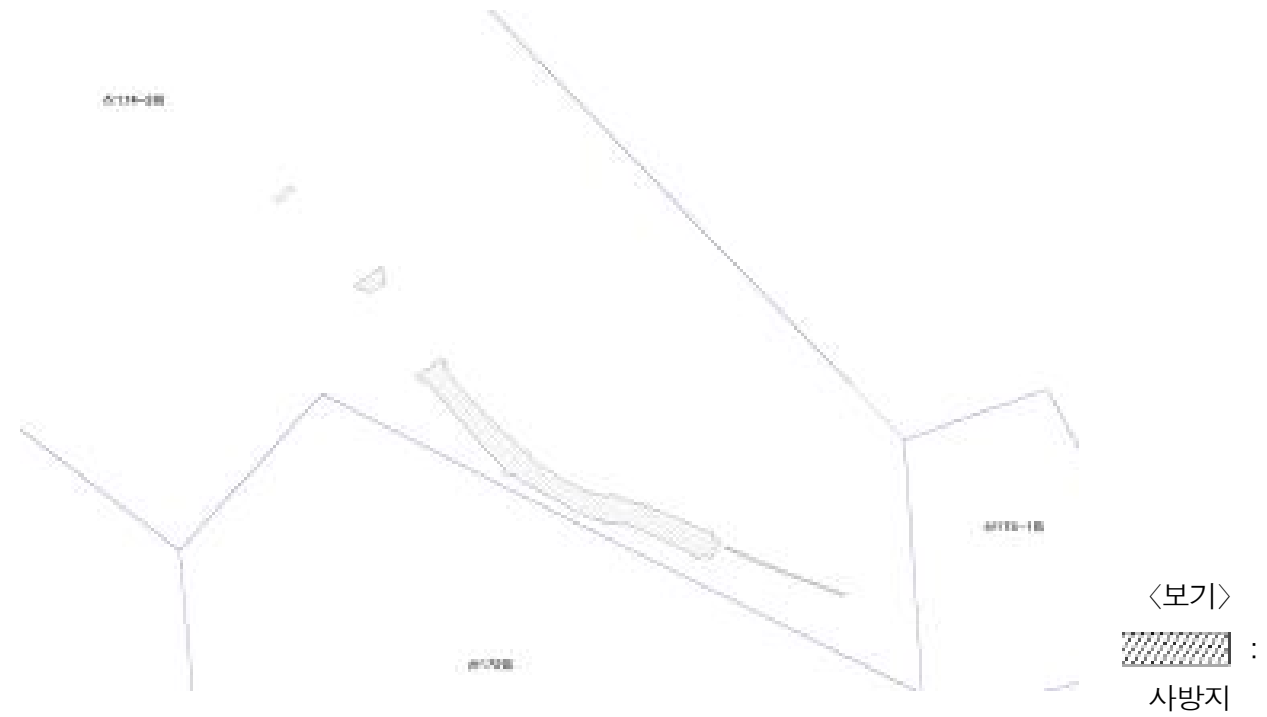
<지정내역>

토지 소재지				사방지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고시번호·일자
인천 남동구 만수동	산1-2	임	246,236	453	남동구고시 제2019- 호 (2019. . .)
인천 남동구 만수동	산1-4	임	169,560	475	
계	2필지		415,796	928	

297mm×420mm[백상지 80g/㎡]

번호: 2019년도 제2호

사방지지정구역도면(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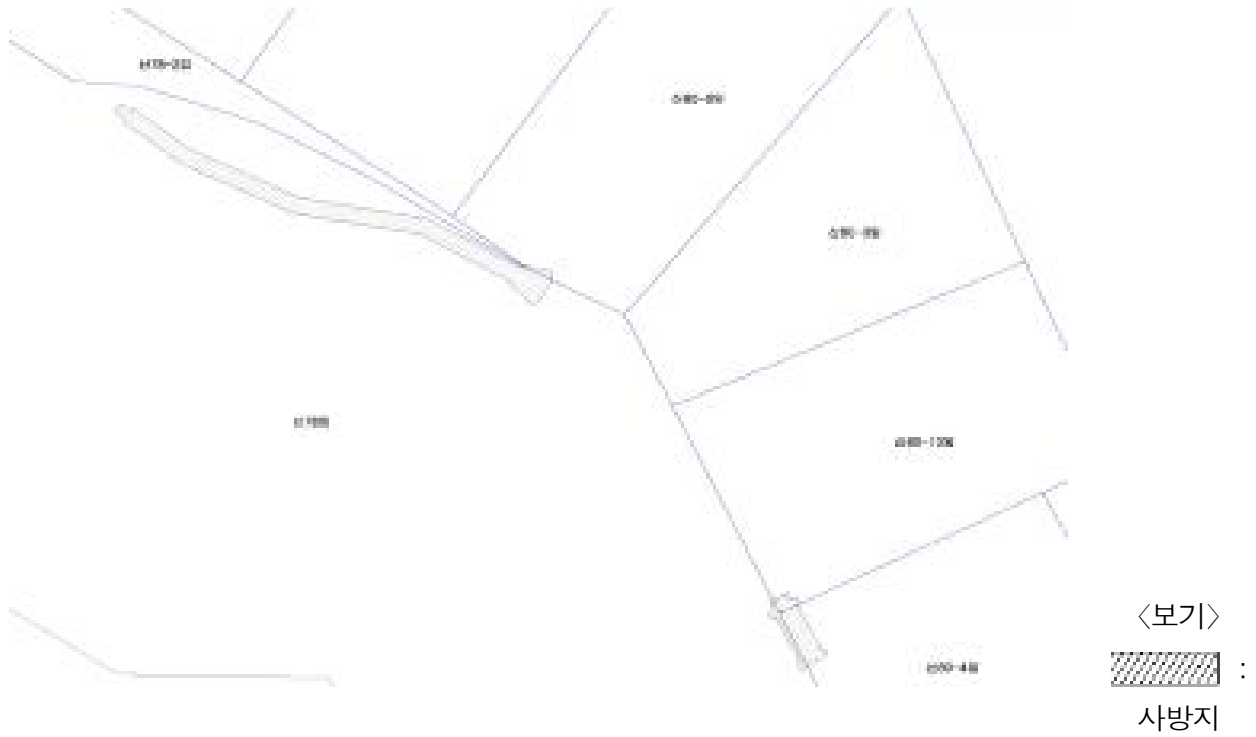


<지정내역>

토지 소재지				사방지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고시번호·일자
인천 남동구 장수동	산174-3	임	32,778	730	남동구고시 제2019- 호 (2019. . .)
계	1필지		32,778	730	

번호: 2019년도 제3호

사방지지정구역도면(논현)



<지정내역>

토지 소재지				사방지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고시번호·일자
인천 남동구 논현동	산78	임	18,973	673	남동구고시 제2019- 호 (2019. . .)
인천 남동구 논현동	산80-4	임	3,041	94	
인천 남동구 논현동	산80-9	임	2,469	13	
인천 남동구 논현동	산80-10	임	2,215	22	
계	4필지		26,698	802	

297mm×420mm[백상지 80g/㎡]

사방지 지정 내역

연번	등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비고
							성명	주소	
계					475,272	2,460			계류보전
1	만수동	산	1-2	임	246,236	453	김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41번지	
2	만수동	산	1-4	임	169,560	475	국(국방부)		
5	장수동	산	174-3	임	32,778	730	국(국토해양부)		
6	논현동	산	78	임	18,973	673	국(산림청)		
9	논현동	산	80-4	임	3,041	94	장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97번길 30	
10	논현동	산	80-9	임	2,469	13	김용*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00	
11	논현동	산	80-10	임	2,215	22	조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10번길 17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19-14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논현동 66-99번지 공영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논현동 66-99번지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5), 교통행정과(☎453-268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1. 01.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9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논현동 66-99번지 공영주차장)
 - 명 칭: 논현동 66-99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3. 사업규모(변경없음): A=4,444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 정: 2018.1.1. ~ 2019.12.31.
 - 변 경: 2018.1.1. ~ 2021.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19-152호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정정)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195호(2008.9.22.)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48호(2017.12.20.)로 사업시행인가)된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 11. 5.

남 동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백운주택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41(간석동) 일원(간석동 900-138)
 - 나. 면적 : 32,366.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법인의 명칭 : 백운주택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나. 법인의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70-1, 3층
 - 다. 대표자 성명 : 정낙인
 - 라. 대표자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7번길 20, 2동 503호 (간석동, 동국아파트)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9년 11월 5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별첨
7. 기타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87)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끝.

구분	연번	상 호 명	주요 실적								자산총액	종업원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소유권자 정보						
			주요사업		투자현황		매출액		순이익							주요주주명		주요주주비율		주요주주소재지		
			사업명	매출액(억)	투자처명	투자금액(억)	매출액(억)	순이익(억)	주주명	비율(%)						주주명	비율(%)	주주명	비율(%)			
수령 또는 사영	1	에스케이	519-9	A-1호	61,960	1		459,000	29.85			다세대주택	1/4	1992.06.27	유	근저당 근저당	1	1	18,200,000 13,000,000	간석새마을금고 민주새마을금고	120144-0000811 120144-0000811	인천 남동구 간석동 39-2 만 전 남동구 백범로 311
수령 또는 사영	2	백승환	519-9	A-101	56,380			459,000	27.15			다세대주택	1/4	1992.06.27	유							
수령 또는 사영	3	오영실	519-9	A-102	56,380			459,000	27.15			다세대주택	1/4	1992.06.27	유							
수령 또는 사영	4	권미복	519-9	A-201	56,380			459,000	27.15			다세대주택	1/4	1992.06.27	유							
수령 또는 사영	5	김민화	519-9	A-202	56,380			459,000	27.15			다세대주택	1/4	1992.06.27	유							
수령 또는 사영	6	이석훈	519-9	A-301	56,380			459,000	27.15			다세대주택	1/4	1992.06.27	유							
수령 또는 사영	7	이송재	519-9	A-302	56,380			459,000	27.15			다세대주택	1/4	1992.06.27	유							
수령 또는 사영	8	홍제나	519-9	A-401	56,380			459,000	27.15			다세대주택	1/4	1992.06.27	유							
수령 또는 사영	9	박경수	519-9	A-402	45,840			459,000	27.15			다세대주택	1/4	1992.06.27	유							
수령 또는 사영	10	유형근	519-9	B-지층	48,210	1		459,000	23.23			다세대주택	1/4	1992.06.27	유							
수령 또는 사영	11	국채자산신탁	519-9	B-101	49,770			459,000	23.96			다세대주택	1/4	1992.06.27	유							
수령 또는 사영	12	한복진	519-9	B-102	48,210			459,000	23.22			다세대주택	1/4	1992.06.27	유							
수령 또는 사영	13	박석준	519-9	B-201	49,770			459,000	23.96			다세대주택	1/4	1992.06.27	유							
수령 또는 사영	14	박성익	519-9	B-202	48,210			459,000	23.22			다세대주택	1/4	1992.06.27	유							
수령 또는 사영	15	조민우	519-9	B-301	49,770			459,000	23.96			다세대주택	1/4	1992.06.27	유							
수령 또는 사영	16	서화순	519-9	B-302	48,210			459,000	23.22			다세대주택	1/4	1992.06.27	유	근저당	1	1	95,000,000	광명농협은행조합	151336-0000156	충북 영동군 영동읍 우봉리 17
수령 또는 사영	17	조현진	519-9	B-401	49,770			459,000	23.96			다세대주택	1/4	1992.06.27	유							
수령 또는 사영	18	김연숙	519-9	B-402	48,210			459,000	23.22			다세대주택	1/4	1992.06.27	유							
수령 또는 사영	19 -1	장태환	731-46		326,901	1	공공	175,000	106.00	공공		단독주택	1/4	1993.02.23	유	근저당	1	1	156,000,000	만수응양신용협동조합	120141-0002128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731-46
수령 또는 사영	19 -2	김춘희	731-46		164,451		공공	175,000	53.00	공공		단독주택	1/4	1993.02.23	유							
수령 또는 사영	20	이효선	899-1	1-101	73,718	1		567,400	48.69			아파트	1/5	1982.12.14	유							
수령 또는 사영	20	이효선	899-0	1-101				2429,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구분	연번	소속사명	원칙 내역								작성일자	종도	종수	종공정도	평가 비율	소속된 이노비 항목						
			소속지		계약종			종 도								원칙의 내용	영리목					
			자 명	종수	원칙액(₩)	종수	종부 비율	종부성(₩)	영리	종부 비율							원칙의 종류	종도	계약종	영리목 내용	상장	영리목적
수령 또는 사용권	44	김태환	900-14	1-401					695,900													
수령 또는 사용권	44	김태환	900-110	1-401					851,400													
수령 또는 사용권	44	김태환	900-111	1-401					520,400													
수령 또는 사용권	44	김태환	899-2	1-401					429,200													
수령 또는 사용권	44	김태환	899-3	1-401					634,800													
수령 또는 사용권	45	정형준	899-1	1-402	73,718				567,400	48.59		아파트	1/5	1982.12.14	유							
수령 또는 사용권	45	정형준	899-0	1-402					2429,200													
수령 또는 사용권	45	정형준	900-14	1-402					695,900													
수령 또는 사용권	45	정형준	900-110	1-402					851,400													
수령 또는 사용권	45	정형준	900-111	1-402					520,400													
수령 또는 사용권	45	정형준	899-2	1-402					429,200													
수령 또는 사용권	45	정형준	899-3	1-402					634,800													
수령 또는 사용권	46	민수현	899-1	1-403	73,718				567,400	48.59		아파트	1/5	1982.12.14	유	근저당	!	!	106,800,000	국민은행	110111-236532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84
수령 또는 사용권	46	민수현	899-0	1-403					2429,200													
수령 또는 사용권	46	민수현	900-14	1-403					695,900													
수령 또는 사용권	46	민수현	900-110	1-403					851,400													
수령 또는 사용권	46	민수현	900-111	1-403					520,400													
수령 또는 사용권	46	민수현	899-2	1-403					429,200													
수령 또는 사용권	46	민수현	899-3	1-403					634,800													
수령 또는 사용권	47	이선희	899-1	1-404	73,718				567,400	48.59		아파트	1/5	1982.12.14	유							
수령 또는 사용권	47	이선희	899-0	1-404					2429,200													
수령 또는 사용권	47	이선희	900-14	1-404					695,900													
수령 또는 사용권	47	이선희	900-110	1-404					851,400													
수령 또는 사용권	47	이선희	900-111	1-404					520,400													
수령 또는 사용권	47	이선희	899-2	1-404					429,200													
수령 또는 사용권	47	이선희	899-3	1-404					634,800													
수령 또는 사용권	48	김기훈	899-1	1-405	73,718				567,400	48.59		아파트	1/5	1982.12.14	유							
수령 또는 사용권	48	김기훈	899-0	1-405					2429,200													
수령 또는 사용권	48	김기훈	900-14	1-405					695,900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구분	연월	설 명	원리 내역								자산별	종도	층수	건축년도	보유 연수	소유권 취득의 원리							
			소형지		경매물			로 지								취득의 종류	영지의 설정대상	취득의 내용	영지의				
			지 면	면적	면적(㎡)	층수	층수	면적(㎡)	면적	층수									상행	제한사항	주소		
수령 또는 사용	63	김명숙	899-0	2-104					2429.200														
수령 또는 사용	63	김명숙	900-14	2-104					696.900														
수령 또는 사용	63	김명숙	900-110	2-104					851.400														
수령 또는 사용	63	김명숙	900-111	2-104					520.400														
수령 또는 사용	63	김명숙	899-2	2-104					429.200														
수령 또는 사용	63	김명숙	899-3	2-104					634.800														
수령 또는 사용	64	최상경	899-1	2-105	78.608				567.400	51.78			미발표	1/5	1982.12.04	유							
수령 또는 사용	64	최상경	899-0	2-105					2429.200														
수령 또는 사용	64	최상경	900-14	2-105					696.900														
수령 또는 사용	64	최상경	900-110	2-105					851.400														
수령 또는 사용	64	최상경	900-111	2-105					520.400														
수령 또는 사용	64	최상경	899-2	2-105					429.200														
수령 또는 사용	64	최상경	899-3	2-105					634.800														
수령 또는 사용	65	황순자	899-1	2-106	78.608				567.400	51.78			미발표	1/5	1982.12.04	유	근저당	1	1	104,000,000	주민주택임대금고	120144-0000994	인천시 남구 관동대로864번길 49(주안동)
수령 또는 사용	65	황순자	899-0	2-106					2429.200														
수령 또는 사용	65	황순자	900-14	2-106					696.900														
수령 또는 사용	65	황순자	900-110	2-106					851.400														
수령 또는 사용	65	황순자	900-111	2-106					520.400														
수령 또는 사용	65	황순자	899-2	2-106					429.200														
수령 또는 사용	65	황순자	899-3	2-106					634.800														
수령 또는 사용	66	양성희	899-1	2-201	78.608				567.400	51.78			미발표	1/5	1982.12.04	유							
수령 또는 사용	66	양성희	899-0	2-201					2429.200														
수령 또는 사용	66	양성희	900-14	2-201					696.900														
수령 또는 사용	66	양성희	900-110	2-201					851.400														
수령 또는 사용	66	양성희	900-111	2-201					520.400														
수령 또는 사용	66	양성희	899-2	2-201					429.200														
수령 또는 사용	66	양성희	899-3	2-201					634.800														
수령 또는 사용	67	강승계	899-1	2-202	78.608				567.400	51.78			미발표	1/5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구분	연번	별도 소유자	주택 내역								지상층	종도	층수	건축년도	완공 연월	소유권 이전의 원천							
			소유자		건축물		면적									면적의 비율	면적의 비율대상		면적의 비율	면적의 비율			
			이전 주	이후 주	면적(㎡)	층수	면적 비율	면적(㎡)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수령 또는 사정	80		신미숙	899-1	2-403	78.608			567.400	51.78			아파트	1/5	1982.12.04	유	근자당	1	1	63,500,000	상생생명주	110111-0005078	서울시 중구 필지로1가 87
수령 또는 사정	80		신미숙	899-0	2-403				2429.200														
수령 또는 사정	80		신미숙	900-14	2-403				696.900														
수령 또는 사정	80		신미숙	900-110	2-403				851.400														
수령 또는 사정	80		신미숙	900-111	2-403				520.400														
수령 또는 사정	80		신미숙	899-2	2-403				429.200														
수령 또는 사정	80		신미숙	899-3	2-403				634.800														
수령 또는 사정	81		이종선	899-1	2-404	78.608			567.400	51.78			아파트	1/5	1982.12.04	유	근자당	1	1	72,000,000	한화생명주	110111-0003204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50 (여의도동)
수령 또는 사정	81		이종선	899-0	2-404				2429.200														
수령 또는 사정	81		이종선	900-14	2-404				696.900														
수령 또는 사정	81		이종선	900-110	2-404				851.400														
수령 또는 사정	81		이종선	900-111	2-404				520.400														
수령 또는 사정	81		이종선	899-2	2-404				429.200														
수령 또는 사정	81		이종선	899-3	2-404				634.800														
수령 또는 사정	82		황성수	899-1	2-405	78.608			567.400	51.78			아파트	1/5	1982.12.04	유	근자당	1	1	84,000,000	상생생명주	110111-0005953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50
수령 또는 사정	82		황성수	899-0	2-405				2429.200														
수령 또는 사정	82		황성수	900-14	2-405				696.900														
수령 또는 사정	82		황성수	900-110	2-405				851.400														
수령 또는 사정	82		황성수	900-111	2-405				520.400														
수령 또는 사정	82		황성수	899-2	2-405				429.200														
수령 또는 사정	82		황성수	899-3	2-405				634.800														
수령 또는 사정	83																						

[illegible]

구분		연월	내역	예산 내역								차입금	매출액	수익률	이익률	사업비 예산회계 정보								
				주요비용		간접비용			기타 비용							총합	인건비	재료비	노임비	관리비	영업외 수익	영향지		
				직접	보통	일반(%)	특수	특별 보통	일반(%)	판매	특별 보통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령 또는 사본	89		정민희	900-110	2-506					851,400														
수령 또는 사본	89		정민희	900-111	2-506					520,400														
수령 또는 사본	89		정민희	899-2	2-506					429,200														
수령 또는 사본	89		정민희	899-3	2-506					634,800														
수령 또는 사본	90		양재자	899-1	3-101	73,718	1			567,400	48,59		아파트	1/5	1982.12.04	유								
수령 또는 사본	90		양재자	899-0	3-101					2429,200														
수령 또는 사본	90		양재자	900-14	3-101					696,900														
수령 또는 사본	90		양재자	900-110	3-101					851,400														
수령 또는 사본	90		양재자	900-111	3-101					520,400														
수령 또는 사본	90		양재자	899-2	3-101					429,200														
수령 또는 사본	90		양재자	899-3	3-101					634,800														
수령 또는 사본	91		노진호	899-1	3-102	36,859		공급		567,400	48,59		아파트	1/5	1982.12.04	유	근처당	1	1	97,200,000	현대해상화재보험(주)	110111-0035893	서울시 중로 구 세종로 178	
수령 또는 사본	91		노진호	899-0	3-102					2429,200														
수령 또는 사본	91		노진호	900-14	3-102					696,900														
수령 또는 사본	91		노진호	900-110	3-102					851,400														
수령 또는 사본	91		노진호	900-111	3-102					520,400														
수령 또는 사본	91		노진호	899-2	3-102					429,200														
수령 또는 사본	91		노진호	899-3	3-102					634,800														
수령 또는 사본	92		최상혁	899-1	3-103	73,718				567,400	48,59		아파트	1/5	1982.12.04	유								
수령 또는 사본	92		최상혁	899-0	3-103					2429,200														
수령 또는 사본	92		최상혁	900-14	3-103					696,900														
수령 또는 사본	92		최상혁	900-110	3-103					851,400														
수령 또는 사본	92		최상혁	900-111	3-103					520,400														
수령 또는 사본	92		최상혁	899-2	3-103					429,200														
수령 또는 사본	92		최상혁	899-3	3-103					634,800														
수령 또는 사본	93		황주표	899-1	3-104	73,718				567,400	48,59		아파트	1/5	1982.12.04	유								
수령 또는 사본	93		황주표	899-0	3-104					2429,200														
수령 또는 사본	93		황주표	9																				

[illegible]

[illegible]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구분	연번	토지·건축물 소유권		토지·건축물 명세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구분	연월	보통소액	자산 내역								자산별	종도	종수	평균년도	평가액	소유권 이의의 처리							
			소액지		중액지			대액지								원래의 소유	원래의 소유대상		원래의 내용	원래의			
			지분	종수	원래지(%)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수령 또는 사권	123	박효준	899-1	4-104	73,718				567,400	48.59			아파트	1/5	1982.12.04	유	근저당	1	1	78,000,000	우리은행	110111-0023393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수령 또는 사권	123	박효준	899-0	4-104					2429,200														
수령 또는 사권	123	박효준	900-14	4-104					696,900														
수령 또는 사권	123	박효준	900-110	4-104					851,400														
수령 또는 사권	123	박효준	900-111	4-104					520,400														
수령 또는 사권	123	박효준	899-2	4-104					429,200														
수령 또는 사권	123	박효준	899-3	4-104					634,800														
수령 또는 사권	124	김중채	899-1	4-201	73,718				567,400	48.59			아파트	1/5	1982.12.04	유							
수령 또는 사권	124	김중채	899-0	4-201					2429,200														
수령 또는 사권	124	김중채	900-14	4-201					696,900														
수령 또는 사권	124	김중채	900-110	4-201					851,400														
수령 또는 사권	124	김중채	900-111	4-201					520,400														
수령 또는 사권	124	김중채	899-2	4-201					429,200														
수령 또는 사권	124	김중채	899-3	4-201					634,800														
수령 또는 사권	125	라민순	899-1	4-202	73,718				567,400	48.59			아파트	1/5	1982.12.04	유							
수령 또는 사권	125	라민순	899-0	4-202					2429,200														
수령 또는 사권	125	라민순	900-14	4-202					696,900														
수령 또는 사권	125	라민순	900-110	4-202					851,400														
수령 또는 사권	125	라민순	900-111	4-202					520,400														
수령 또는 사권	125	라민순	899-2	4-202					429,200														
수령 또는 사권	125	라민순	899-3	4-202					634,800														
수령 또는 사권	126	홍희영	899-1	4-203	73,718				567,400	48.59			아파트	1/5	1982.12.04	유							
수령 또는 사권	126	홍희영	899-0	4-203					2429,200														

구분	연번	소유권자명	원인 내역								자산번호	종도	층수	건축년도	면적(㎡)	소유권 이의제청 원리						
			소유권		건물내역			토지								원칙적 내용	영지의장					
			방법	비고	면적(㎡)	층수	공용부분	면적(㎡)	단위	공용부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령 또는 사용	127	정미애	899-2	4-204					429,200													
수령 또는 사용	127	정미애	899-3	4-204					634,800													
수령 또는 사용	128	강도영	899-1	4-301	73.718				567,400	48.59		아파트	1/5	1982.12.04	유	근저당	1	1	78,000,000	신한은행	110111-0012809	서울시 은평구 태평로2가 129
수령 또는 사용	128	강도영	899-0	4-301					2429,200													
수령 또는 사용	128	강도영	900-14	4-301					696,900													
수령 또는 사용	128	강도영	900-110	4-301					851,400													
수령 또는 사용	128	강도영	900-111	4-301					520,400													
수령 또는 사용	128	강도영	899-2	4-301					429,200													
수령 또는 사용	128	강도영	899-3	4-301					634,800													
수령 또는 사용	129	이다봉	899-1	4-302	73.718				567,400	48.59		아파트	1/5	1982.12.04	유	근저당	1	1	7,500,000	한국주택은행	공동담보 제104	서울시 은평구 태평로1가 61-1
수령 또는 사용	129	이다봉	899-0	4-302					2429,200													
수령 또는 사용	129	이다봉	900-14	4-302					696,900													
수령 또는 사용	129	이다봉	900-110	4-302					851,400													
수령 또는 사용	129	이다봉	900-111	4-302					520,400													
수령 또는 사용	129	이다봉	899-2	4-302					429,200													
수령 또는 사용	129	이다봉	899-3	4-302					634,800													
수령 또는 사용	130	남기영	899-1	4-303	73.718				567,400	48.59		아파트	1/5	1982.12.04	유	가압류			3,000,000	민중경제시선평구		
수령 또는 사용	130	남기영	899-0	4-303					2429,200													
수령 또는 사용	130	남기영	900-14	4-303					696,900													
수령 또는 사용	130	남기영	900-110	4-303					851,400													
수령 또는 사용	130	남기영	900-111	4-303					520,400													
수령 또는 사용	130	남기영	899-2	4-303					429,200													
수령 또는 사용	130	남기영	899-3	4-303					634,800													
수령 또는 사용	131	백승훈	899-1	4-304	73.718				567,400	48.59		아파트	1/5	1982.12.04	유							
수령 또는 사용	131	백승훈	899-0	4-304					2429,200													
수령 또는 사용	131	백승훈	900-14	4-304					696,900													
수령 또는 사용	131	백승훈	900-110	4-304					851,400													
수령 또는 사용	131	백승훈	900-111	4-304					520,400													

[illegible]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구분	연번	소재지	토지 내역										지상권	용도	종수	면적(㎡)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건축물		용도		면적(㎡)		소유권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지번	종수	면적(㎡)	종수	면적(㎡)	종수	면적(㎡)	종수	면적(㎡)	종수						면적(㎡)	종수	면적(㎡)	종수	면적(㎡)	종수	면적(㎡)	종수	면적(㎡)	
수용 토지·건축물	137	김천군	899-0	4-502				2429.200																			
수용 토지·건축물	137	김천군	900-14	4-502				996.900																			
수용 토지·건축물	137	김천군	900-110	4-502				851.400																			
수용 토지·건축물	137	김천군	900-111	4-502				520.400																			
수용 토지·건축물	137	김천군	899-2	4-502				429.200																			
수용 토지·건축물	137	김천군	899-3	4-502				634.800																			
수용 토지·건축물	138	-1	차승철	899-1	4-503	36.859		공유	567.400	24.30	공유		아파트	1/5	1982.12.04	유											
수용 토지·건축물	138	-1	차승철	899-0	4-503				2429.200																		
수용 토지·건축물	138	-1	차승철	900-14	4-503				996.900																		
수용 토지·건축물	138	-1	차승철	900-110	4-503				851.400																		
수용 토지·건축물	138	-1	차승철	900-111	4-503				520.400																		
수용 토지·건축물	138	-1	차승철	899-2	4-503				429.200																		
수용 토지·건축물	138	-1	차승철	899-3	4-503				634.800																		
수용 토지·건축물	138	-2	차승철	899-1	4-503	36.859		공유	567.400	24.30	공유		아파트	1/5	1982.12.04	유											
수용 토지·건축물	138	-2	차승철	899-0	4-503				2429.200																		
수용 토지·건축물	138	-2	차승철	900-14	4-503				996.900																		
수용 토지·건축물	138	-2	차승철	900-110	4-503				851.400																		
수용 토지·건축물	138	-2	차승철	900-111	4-503				520.400																		
수용 토지·건축물	138	-2	차승철	899-2	4-503				429.200																		
수용 토지·건축물	138	-2	차승철	899-3	4-503				634.800																		
수용 토지·건축물	139		정우석	899-1	4-504	73.720			567.400	48.49			아파트	1/5	1982.12.04	유											
수용 토지·건축물	139		정우석	899-0	4-504				2429.200																		
수용 토지·건축물	139		정우석	900-14	4-504				996.900																		
수용 토지·건축물	139		정우석	900-110	4-504				851.400																		
수용 토지·건축물	139		정우석	900-111	4-504				520.400																		
수용 토지·건축물	139		정우석	899-2	4-504				429.200																		
수용 토지·건축물	139		정우석	899-3	4-504				634.800																		
수용 토지·건축물	140		이창석	899-2					429.200	169.82																	
수용 토지·건축물	141		조규택	900		486.170	1		189.000	189.00			군항생활시설, 주택	1/4	1986.11.26	유											
수용 토지·건축물	142	-1	심우석	900-1		177.850	1	공유	173.200	86.60	공유		군항시설,주택	1/3	1991.04.11	유											
수용 토지·건축물	142	-2	장미희	900-1		177.850		공유	173.200	86.60	공유		군항시설,주택	1/5	1991.04.11	유											
수용 토지·건축물	143		이창석	900-2		471.750	1		216.600	216.60			단독, 군항생활시설, 주택	1/5	2002.06.27	유	정세권설정		50,000,000	요령비							
수용 토지·건축물	144		최희자	900-3		272.375	1		251.400	251.40			군항생활시설, 주택	1/2	1988.02.03	유											

구분	연월	설 치 장 소	설 치 내 역								자 살 자	종 도	종 수	종 교 연 도	종 가 유 무	소 속 한 이 의 회 결 과										
			소 속 회		경 력 회			회 자								종 교 회 결 과	종 교 회 결 과	종 교 회 결 과	종 교 회 결 과	종 교 회 결 과	결 과					
			회 수	회 수	회 수(%)	회 수	회 수	회 수(%)	회 수	회 수											회 수(%)	결 과	결 과	결 과		
수령 또는 사본	145	성북천	900~4	101	55,840	1		192,000	27.49			공평주택	1/4	1986.11.26	유											
수령 또는 사본	146	이원천	900~4	102	55,840			192,000	27.49			공평주택	1/4	1986.11.26	유	근처당	1	1	12,000,000	거리봉새마을금고	115144-0000925	서울시 구로구 거리봉동 18-3				
수령 또는 사본	147	이원천	900~4	201	55,840			192,000	27.49			공평주택	1/4	1986.11.26	유	근처당	1	1	44,400,000	만주새마을금고	120144-0000811	인천시 남동구 강석동 39-1				
수령 또는 사본	148	홍보천	900~4	202	55,840			192,000	27.49			공평주택	1/4	1986.11.26	유											
수령 또는 사본	149	송보천	900~4	301	55,840			192,000	27.49			공평주택	1/4	1986.11.26	유											
수령 또는 사본	150	국경수	900~4	302	55,840			192,000	27.49			공평주택	1/4	1986.11.26	유											
수령 또는 사본	151	장천나	900~4	401	21,190			192,000	11.43			공평주택	1/4	1986.11.26	유											
수령 또는 사본	152	관곡천	900~4	402	29,790			192,000	15.66			공평주택	1/4	1986.11.26	유											
수령 또는 사본	153	국기호	900~5	B01	44,030	1		178,400	29.74			다세대주택	1/2	1990.12.01	유											
수령 또는 사본	154	박재천	900~5	B02	44,030			178,400	29.74			다세대주택	1/2	1990.12.01	유											
수령 또는 사본	155	조물천	900~5	101	44,030			178,400	29.73			다세대주택	1/2	1990.12.01	유	근처당	1	1	13,000,000	국민은행	110111-2365321	서울시 은구 남대문로84				
수령 또는 사본	156	이호천	900~5	102	44,030			178,400	29.73			다세대주택	1/2	1990.12.01	유											
수령 또는 사본	157	김천천	900~5	201	44,030			178,400	29.73			다세대주택	1/2	1990.12.01	유											
수령 또는 사본	158	이호천	900~5	202	44,030			178,400	29.73			다세대주택	1/2	1990.12.01	유											
수령 또는 사본	159	홍천천	900~6		300,190	1		124,500	124.50			주택, 근린생활시설	1/3	1990.05.09	유											
수령 또는 사본	160	이호천	900~7		61,150	1		155,100	155.10			단독주택	1/1	1976.06.12	유											
수령 또는 사본	161	김천천	900~8		98,880	1		98,700	98.70			단독주택	1/3	2004.10.14	유											
수령 또는 사본	162	송귀천	900~9		44,830	1		85,90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구분	연번	소유권 소유자		건축 내역								지상권	종도	종수	건축년도	면적 (㎡)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건축물		토지									면적외 내용		권리외 내용			권리외 상당 부담		
		소재지	층수	면적(㎡)	층수	면적(㎡)	면적	권리외 부담	소재지	건축물	상당 부담								부담 내용	부담 내용				
수용 또는 사용	174	김영순	900-159	301					2,000															
수용 또는 사용	175	김태복	900-13	401	69,660				115,500	44.01			공동주택	1/5	2003.06.18	유								
수용 또는 사용	175	김태복	900-159	401					2,000															
수용 또는 사용	176	이성희	900-16	다가구	342,390	1			191,500	191.50			다가구주택	1/3	2002.05.17	유								
수용 또는 사용	177	김종자	900-18		302,310	1			215,000	215.00			단독주택	1/3	1990.08.13	유	근저당	1	1	202,800,000	주면1.5.5동 세미블록고	120144-0000994	인천시 남구 주안동 925-25	
수용 또는 사용	178	류종수	900-20	다가구	299,200	1			152,000	152.00			다가구주택	1/3	1993.12.15	유								
수용 또는 사용	179	서상문	900-21		66,110	1			181,500	181.50			단독주택	1/3	1969.05.29	유								
수용 또는 사용	180	박영진	900-22		92,290	1			130,400	130.40			단독주택	1/1	1984.05.02	유	근저당	1	1	246,000,000	인천성왕산봉황동조합	120141-0000429	인천시 남동구 경인로524번 길 37(간석동)	
수용 또는 사용	181	-1	성광교회	900-84					156,300	156.30						근저당 지상권	1	1	246,000,000	인천성왕산봉황동조합	120141-0000429	인천시 남동구 경인로524번 길 37(간석동)		
수용 또는 사용	181	-2	인천서성왕 산봉황동	900-84								1				지상권	1				인천성왕산봉황동조합	120141-0000429	인천시 남동구 경인로524번 길 37(간석동)	
수용 또는 사용	182	-1	성광교회 유지재단	900-17		2,774,850	1		1105,500	1,079.00			종교시설	2/3	2014.12.30	유								
수용 또는 사용	182	-2	성광교회 유지재단	900-23					177,500	177.50			종교시설	2/3	2014.12.30	유								
수용 또는 사용	182	-3	성광교회 유지재단	900-24					146,300	146.30			종교시설	2/3	2014.12.30	유								
수용 또는 사용	183	장효순	900-25		317,040	1			173,500	173.50			근린시설,주택	1/2	1990.09.27	유								
수용 또는 사용	184	김민환	900-26		89,970	1			145,500	145.50			단독주택	1/1	1982.07.09	유								
수용 또는 사용	185	북면희	900-27		479,990	1			264,700	264.70			다가구주택	1/3	1997.09.25	유								
수용 또는 사용	186	안명복	900-28		85,390	1			205,400	205.40			단독주택	1/1	1977.06.23	유								
수용 또는 사용	187	한상실업	900-34		1,060,001	1			360,200	360.20			근린시설, 교육연구시설	1/5	1990.08.01	유	근저당	1	1	400,000,000	만주새마을금고	120144-0000811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39-2	
수용 또는 사용	188	강미례	900-36		494,710	1			236,300	236.30			근린시설, 단독주택	1/4	2003.04.17	유	근저당	1	1					
수용 또는 사용	189	홍선일	900-38		494,710	1			237,000	237.00			근린시설, 단독주택	1/4	2000.12.07	유	근저당 전세권	1	1	104,000,000 24,000,000 24,000,000 60,000,000 52,000,000 60,000,000 100,000,000	신항원정 물림가족명 박준민	110111-0012809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수용 또는 사용	190	송효환	900-40		82,300	1			119,700	119.70			단독주택	1/1	1977.06.12	유								
수용 또는 사용	191	백계평	900-41		82,300	1			117,500	117.50			단독주택	1/1	1977.06.12	유	근저당	1	1	130,000,000	주안동신기새마을금고	120144-0000647	인천시 남구 주안동 1330-6	
수용 또는 사용	192	김동식	900-42		82,300	1			119,100	119.10			단독주택	1/1	1977.06.12	유								
수용 또는 사용	193	김재형	900-43		131,890	1			118,800	118.80			단독주택	1/2	1993.09.23	유	근저당	1	1	96,000,000	인천수산합동조합	124138-0000315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577-5	
수용 또는 사용	194	오화삼	900-44		95,470	1			197,900	197.90			단독주택	1/1	1977.12.15	유	근저당	1	1	255,500,000	만주새마을금고	120144-0000811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39-2	
수용 또는 사용	195	서미희	900-45		173,410	1			189,300	189.30			단독주택	1/2	1995.08.07	유								
수용 또는 사용	195	김봉래	900-46		82,300	1			120,500	120.50			단독주택	1/1	1977.07.27	유								
수용 또는 사용	196	황지호	900-47		82,300	1			119,900	119.90			단독주택	1/1	1977.07.20	유								
수용 또는 사용	197	김병기	900-48		82,300	1			118,700	118.70			단독주택	1/1	1977.07.20	유								
수용 또는 사용	198	이성만	900-49		82,300	1			119,500	119.50			단독주택	1/1	1977.04.20	유	근저당	1	1	143,000,000	관인북부수산협 동조합	124534-0000202	인천시 강화군 강화동 강화대 로38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구분	연번	소유권	토지·건축물 명세							지상권	용도	층수	건축연도	평가액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건축물			토지							권리명	대상지	건축물	권리명	권리명			
			지번	면적	건적면적(㎡)	층수	부속	면적(㎡)	단위	상항									상항명	주소		
수용 또는 사용	199		여인호	900-50		82.300	1		118.000	118.00		단독주택	1/1	1977.07.20	유							
수용 또는 사용	200		여주연	900-51		132.920	1		117.100	117.10		소매점,사무소	1/2	1977.07.20	유	근저당	1	1	180,000,000	국민은행	110111-2965321	서울시 은구 남대문로84
수용 또는 사용	201		여재홍	900-52		126.730	1		198.700	198.70		점포,단독주택	1/1	1977.08.23	유							
수용 또는 사용	202		강예현	900-53		82.300	1		119.100	119.10		단독주택	1/5	1977.07.27	유							
수용 또는 사용	203		이형준	900-54		82.300	1		119.900	119.90		단독주택	1/1	1977.07.27	유							
수용 또는 사용	204		조현주	900-55		82.430	1		119.000	119.00		단독주택	1/1	1977.08.23	유	근저당	1	1	96,000,000	농협은행	110111-4809385	서울시 은구 통일로120(종로로1가)
수용 또는 사용	205		노상수	900-56		82.430	1		119.400	119.40		단독주택	1/1	1977.08.23	유							
수용 또는 사용	206		정종복	900-57		82.300	1		119.800	119.80		단독주택	1/1	1977.07.27	유	근저당	1	1	24,000,000	무명농업협동조합	124238-0000363	인천시 무명구 갈산동 396
수용 또는 사용	207		김미영	900-58		82.300	1		118.800	118.80		단독주택	1/1	1977.07.27	유	근저당	1	1	132,000,000	흥시기업은행		
수용 또는 사용	208		권영남	900-59		82.960	1		118.300	118.30		단독주택	1/1	1977.08.23	유	근저당	1	1	120,000,000	남농농업협동조합	120136-0000165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14-1
수용 또는 사용	209		조성훈	900-60		82.630	1		120.400	120.40		단독주택	1/1	1977.08.23	유							
수용 또는 사용	210		한성태	900-61		82.630	1		118.600	118.60		단독주택	1/1	1977.08.23	유	근저당	1	1	136,500,000	인천성암신협은행조합	120141-0000429	인천시 남동구 관석동 518-26
수용 또는 사용	211		김희태	900-62		159.320	1		141.900	141.90		단독주택	1/2	1977.06.12	유							
수용 또는 사용	212		김우영	900-63		161.370	1		132.900	132.90		단독주택	1/2	1977.07.27	유							
수용 또는 사용	213		임정식	900-64		132.840	1		117.200	117.20		단독주택	1/2	1977.07.27	유							
수용 또는 사용	214		이석주	900-65		82.300	1		118.700	118.70		단독주택	1/1	1977.07.27	유	근저당	1	1	90,000,000	남농농업협동조합	120136-0000165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14-1
수용 또는 사용	215		김지현	900-66		82.300	1		117.100	117.10		단독주택	1/1	1977.07.27	유	근저당	1	1	120,000,00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	110111-0013419	서울시 은구로 공평동 100
수용 또는 사용	216		박진현	900-67		82.300	1		117.600	117.60		단독주택	1/1	1977.07.27	유	근저당	1	1	65,000,000	인천수산협동조합	124138-0000315	인천시 연수구 만수동 577-5
수용 또는 사용	217	-1	최세미	900-68					118.700	39.57	공유											
수용 또는 사용	217	-2	이순호	900-68					118.700	39.57	공유											
수용 또는 사용	217	-3	성암교회	900-68					118.700	39.57	공유											
수용 또는 사용	217		성암교회	900-69					117.100	117.10												
수용 또는 사용	218		홍석훈	900-70		82.300	1		116.900	116.90		단독주택	1/1	1977.07.27	유	근저당	1	1	174,720,000	동우주택주	110111-009528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치곡동)
수용 또는 사용	219		조성희	900-71		82.300	1		118.100	118.10		단독주택	1/1	1977.07.27	유							
수용 또는 사용	220		박우나	900-72		82.300	1		121.400	121.40		단독주택	1/1	1977.07.20	유	근저당	1	1	787,000,000	한국주택금융공사	110171-0029402	서울시 은구 남대문로5가 6-1
수용 또는 사용	221		양영훈	900-73		127.120	1		195.500	195.50		단독,근린생활시설	1/1	1977.08.02	유	근저당	1	1	60,000,000	농협은행	110111-4809385	서울시 은구 통일로120(종로로1가)
수용 또는 사용	222	-1	유민현	900-74		970.570	1		154.900	154.90		근린생활시설	1/1	1991.11.02	유	근저당	1	1				
수용 또는 사용	222	-2	유민현	900-75					121.000	121.00						근저당	1	1	720,000,000	신한은행	110111-0012809	서울시 은구 태평로2가 120
수용 또는 사용	223		최영호	900-76		82.300	1		124.300	124.30		단독주택	1/1	1977.07.20	유	근저당	1	1	130,000,000	민주새마을금고	120144-0000811	인천시 남동구 관석동 39-2
수용 또는 사용	224	-1	조대만	900-77		41.150	1	공유	122.700	61.85	공유	단독주택	1/1	1977.07.20	유							
수용 또는 사용	224	-2	정숙희	900-77		41.150		공유	122.700	60.85	공유	단독주택	1/1	977.07.20	유							
수용 또는 사용	225		김호민	900-78		84.680	1		122.900	122.90		단독주택	1/1	1977.08.23	유							
수용 또는 사용	226		신석호	900-79		84.680	1		123.500	123.50		단독주택	1/1	1977.08.23	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구분	연번	소유권	토지 내역							지상권	소유권	연공비율	취득연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재지		건축물		토지							권리명	권리명		권리명	권리명					
			소재지	소재지	건축물	건축물	면적(㎡)	종류	면적						종류	종류		종류	면적	종류	면적	종류	
수용 또는 사용	227	유명리	900-80		84,480	1		119,700	119.70			단독주택	1/1	1977.08.23	유								
수용 또는 사용	228	흥덕동	900-81		82,170	1		119,400	119.40			단독주택	1/1	1977.08.23	유								
수용 또는 사용	229	이민동	900-82		82,170	1		116,100	116.10			단독주택	1/1	1977.08.12	유	근저당	1	1	168,000,000	남동농림청통조항	110111-0012809		
수용 또는 사용	230	김덕식	900-83		84,690	1		118,900	118.90			단독주택	1/1	1977.08.23	유								
수용 또는 사용	231	-1	이광식	900-85		148,020	1		137,400	137.40			단독주택	1/2	1993.12.03	유	근저당	1	1	86,400,000	국립은행	110111-236532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84
수용 또는 사용	231	-2	이광식	900-97		139,320	1		127,600	127.60			근원시설, 주택	1/2	1977.08.12	유	근저당	1	1	30,000,000	건물확박(주)	180111-0003391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588
수용 또는 사용	232	한재학	900-86		82,450	1		123,700	123.70			단독주택	1/1	1977.08.23	유	근저당	1	1	52,000,000	한미은행	110111-0303539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84	
수용 또는 사용	233	권택호	900-87		82,450	1		121,100	121.10			단독주택	1/1	1977.08.23	유								
수용 또는 사용	234	정영관	900-88		82,430	1		123,000	123.00			단독주택	1/1	1977.08.23	유								
수용 또는 사용	235	박민선	900-89		82,140	1		123,900	123.90			단독주택	1/1	1977.08.23	유	근저당	1	1	52,800,000	남동농림청통조항	120136-0000165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14-1	
수용 또는 사용	236	송희서	900-90		82,300	1		117,200	117.20			단독주택	1/1	1977.07.27	유	근저당	1	1	144,000,000	신한은행			
수용 또는 사용	237	조규필	900-91		82,300	1		117,500	117.50			단독주택	1/1	1977.07.27	유								
수용 또는 사용	238	김달근	900-92		82,300	1		116,500	116.50			주택	1/1	1977.07.20	유	근저당	1	1	90,000,000	남동농림청통조항	120136-0000165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14-1	
수용 또는 사용	239	임기호	900-93		82,300	1		118,100	118.10			주택	1/1	1977.07.24	유								
수용 또는 사용	240	홍광광	900-94		82,460	1		117,400	117.40			주택	1/1	1977.08.23	유								
수용 또는 사용	241	인주 새마을금고	900-95		276,390	1		153,000	153.00			근원생활시설	1/2	1989.02.10	유								
수용 또는 사용	242	나유진	900-96		131,350	1		119,100	119.10			주택	1/2	1977.07.27	유								
수용 또는 사용	243	-1	오정년	900-99		41,150	1	공공	118,600	59.30	공공	주택	1/1	1977.07.27	유								
수용 또는 사용	243	-2	오정년	900-99		41,150		공공	118,600	59.30	공공	주택	1/1	1977.07.27	유								
수용 또는 사용	244	강정봉	900-100		82,300	1		118,700	118.70			주택	1/1	1977.07.27	유	근저당	1	1	41,000,000	인주새마을금고	120144-0000811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39-2	
수용 또는 사용	245	권영식	900-101		132,220	1		118,600	118.60			다가구주택	1/2	1994.06.03	유	근저당	1	1	56,000,000	인주새마을금고	120144-0000811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39-2	
수용 또는 사용	246	구갑희	900-102		82,300	1		118,900	118.90			주택	1/1	1977.08.12	유								
수용 또는 사용	247	배귀일	900-103		132,050	1		126,300	126.30			주택(2가구)	1/2	1977.06.12	유								
수용 또는 사용	248	김주현	900-104		82,430	1		170,000	170.00			주택	1/1	1977.06.12	유								
수용 또는 사용	249	장기조	900-105		84,710	1		170,100	170.10			주택	1/1	1977.06.12	유								
수용 또는 사용	250	황순자	900-106		82,140	1		116,400	116.40			주택	1/1	1977.08.23	유								
수용 또는 사용	251	강예현	900-107	다가구	370,900	1		196,000	196.00			단독주택(7가구)	1/3	1994.06.01	유	근저당	1	1	58,500,000	인천성왕산청통조항	120141-0000429	인천시 남동구 경인로524번길 37(간석동)	
수용 또는 사용	252	이순우	900-108		80,220	1		93,600	93.60			주택	1/1	1977.08.12	유								
수용 또는 사용	253	정명선	900-109		82,300	1		183,200	183.20			주택	1/1	1977.07.20	유								
수용 또는 사용	254	김민희	900-112		84,780	1		136,000	136.00			주택	1/1	1977.07.20	유								
수용 또는 사용	255	최정환	900-113		82,140	1		119,400	119.40			주택	1/2	1977.07.20	유								
수용 또는 사용	256	박상근	900-114		84,750	1		120,400	120.40			주택	1/2	1977.07.20	유								
수용 또는 사용	257	임주현	900-115		82,300	1		118,700	118.70			주택	1/2	1977.07.20	유								

구분	연번	순번	성명	주택 내역							자산별	종도	종수	발급연도	국가보유	소유권 이의제 제정						
				소유권		경매권			통지							소유권 내용	명목지					
				지분	종수	발급액(㎡)	종수	발급액(㎡)	통지	발급액(㎡)							성명	성명(영문)	주소			
수령 또는 사정	258	-1	이진호	900-116		247,335		공유	244,100	122.05	공유	군현시정, 단축주택	1/4	2003.04.17	유	군지당	1	1	660,000,000	신한은행	110111-0012809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수령 또는 사정	258	-2	조홍익	900-116		247,335	1	공유	244,100	122.05	공유	군현시정, 단축주택	1/4	2003.04.17	유							
수령 또는 사정	259		홍미연	900-119		399,905	1		238,500	238.50		군현시정, 주택	1/5	1991.08.09	유							
수령 또는 사정	260		김정복	900-121		78,000	1		119,800	119.80		주택	1/1	1977.10.11	유							
수령 또는 사정	261		조복환	900-122		128,540	1		119,500	119.50		주택	1/2	1977.10.11	유	군지당	1	1	114,000,000	군자농림청통조환	130136-000203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석우동 경로1로 88(석우동)
수령 또는 사정	262		박승복	900-123		143,230	1		144,600	144.60		주택	1/2	1977.09.12	유							
수령 또는 사정	263		홍순갑	900-124		153,250	1		130,900	130.90		주택	1/2	1977.11.12	유	군지당	1	1	42,000,000	남동농림청통조환	120136-0000165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14-1
수령 또는 사정	264		고남봉	900-125		82,300	1		116,600	116.60		주택	1/1	1977.10.12	유	군지당	1	1	26,000,000	한화생명	110111-0003204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수령 또는 사정	265		김기환	900-126		82,390	1		118,900	118.90		주택	1/1	1977.10.12	유							
수령 또는 사정	266		임성영	900-127		82,300	1		119,000	119.00		단축주택	1/1	1977.10.11	유							
수령 또는 사정	267		강희태	900-128		115,460	1		111,900	111.90		군현생활시설	1/2	1993.10.06	유	군지당	1	1	360,000,000	우리은행	110111-0023393	서울시 중구 소공동 51(회현동1가)
수령 또는 사정	268		민재국	900-131	평보행동 B	360,580	1		208,600	208.60		단축주택	1/3	2002.03.29	유	군지당	1	1	96,000,000	한정신용협동조합	114241-0000590	서울시 평산구 한강대로 156(한강로2가)
수령 또는 사정	269		황남복	900-133		120,980	1		136,000	136.00		단축주택	1/1	1983.11.28	유	군지당	1	1	48,000,000	남동농림청통조환	120136-0000165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14-1
수령 또는 사정	270		정민선	900-134		131,920	1		125,700	125.70		군현생활시설, 주택	1/2	1983.11.28	유							
수령 또는 사정	271		이병덕	900-135		192,780	1		109,400	109.40		군현생활시설, 주택	1/3	1988.04.15	유							
수령 또는 사정	272	-1	김성자	900-136	101	153,230	1		388,900	53.67		교육연구개발시설	1/4	1991.04.02	유							
수령 또는 사정	272	-2	김성자	900-136	102	59,570			388,900	20.85		군현연구개발시설	1/4	1991.04.02	유							
수령 또는 사정	272	-3	김성자	900-136	201	223,450			388,900	78.27		군현연구개발시설	1/4	1991.04.02	유							

구분	연번	건물명	소유권		건축 내역					자실률	층도	층수	건축연도	건축면적	소유권 보유권 현황										
			소유권	비율	건축내역			면적							소유권	비율	소유권	비율	소유권	비율	소유권	비율			
					연도	비율	면적	비율	연도														비율	연도	비율
수령 또는 사용	281	구선화	900-19	101	54,430				55,700	22.55				공평주택	1/4	2002.07.24	유	근처당	1	1	45,500,000	민주세대물결고	120144-0000811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39-2	
수령 또는 사용	281	구선화	900-147	101				161,300																	
수령 또는 사용	282	홍당심	900-19	102	57,850				55,700	23.95				공평주택	1/4	2002.07.24	유	근처당	1	1	120,900,000	서진도농업협동조합	206136-0002077	경남진도군 회화면 역곡리 351-2	
수령 또는 사용	282	홍당심	900-147	102				161,300																	
수령 또는 사용	283	이명복	900-19	201	54,430				55,700	22.55				공평주택	1/4	2002.07.24	유	근처당	1	1	79,800,00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생명			
수령 또는 사용	283	이명복	900-147	201				161,300																	
수령 또는 사용	284	이명환	900-19	202	57,850				55,700	23.95				공평주택	1/4	2002.07.24	유								
수령 또는 사용	284	이명환	900-147	202				161,300																	
수령 또는 사용	285	양오숙	900-19	301	54,430				55,700	22.55				공평주택	1/4	2002.07.24	유								
수령 또는 사용	285	양오숙	900-147	301				161,300																	
수령 또는 사용	286	박주연	900-19	302	49,850				55,700	20.65				공평주택	1/4	2002.07.24	유								
수령 또는 사용	286	박주연	900-147	302				161,300																	
수령 또는 사용	287	나미순	900-19	401	51,510				55,700	21.34				공평주택	1/4	2002.07.24	유	근처당	1	1	66,300,000	삼성생명	110111-0005953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50	
수령 또는 사용	287	나미순	900-147	401				161,300																	
수령 또는 사용	288	손여정	900-19	402	31,230				55,700	12.93				공평주택	1/4	2002.07.24	유	근처당	1	1	42,900,000	국민은행	110111-236532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84	
수령 또는 사용	288	손여정	900-147	402				161,300																	
수령 또는 사용	289	해원수	900-149	간석동B	495,340	1			268,900	268.90				다가구주택	1/3	1997.09.25	유	근처당	1	1	48,000,000	민주세대물결고	120144-0000811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39-2	
수령 또는 사용	290	성택훈	900-152	201	60,550	1			197,000	25.78				공평주택	1/5	2003.06.18	유								
수령 또는 사용	291	유순화	900-152	202	60,550				197,000	25.78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19-154호

도시계획시설(시장 : 소래어시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시장 : 소래어시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1. 6.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6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시장: 소래포구 어시장)
 - 명 칭: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3. 사업규모(변경없음): A=4,303㎡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 성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성 명: 소래포구어시장현대화사업협동조합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13, 3층(논현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실시계획고시일 ~ 2020.12.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19-156호

간석자유시장주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381호(2015.12.3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34호(2016.06.20.)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462번지 일원의 간석자유시장주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동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9. 11. 6.

남 동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간석자유시장주변 주거환경관리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주거환경 관리사업	간석 자유시장 주변	남동구 간석동 224-462번지 일원	12,216			-

3.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2,216	-	12,216	100.0	
준주거지역	12,216	-	12,216	100.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규격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58	6	국지도로	90(90)	소로1-3	소로1-229	일반도로	-	-	

※ ()는 정비구역 내 사항임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9	주차장	노외주차장	간석3동 37-109	284.0	-	284.0	-	-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3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간석3동 224-462	520.0	-	520.0	-	-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1) 건축분야(변경)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비 고
변경	공동이용 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남동구 간석동 224-462, 224-461, 224-800	727.00	◦ 기존의 경로당 및 어린이집을 철거 후 신축 - 경로당, 커뮤니티센터, 어린이집 ◦ 친환경적이고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2) 기타분야(변경)

사업명	계 획 내 용		비 고
	위 치	면적(m²)/개소	
가로환경 개선	◦ 차도 및 인도 정비 - 구역 내 도로	1,900m²	-
가로등, CCTV 보완 및 설치	◦ 주민협의 결과에 따라 지정된 장소 ◦ 마을 내 방범 사각지대	CCTV 5개소, 가로등 7개소	-
주차장	◦ 간석동 224-437, 224-436, 224-435, 224-606, 37-116, 37-117, 산 32-11임	1,272m²(8필지)	-

※ 주 : 주민협의 결과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사업시행

라.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1)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주민 공동체 활성화 계획	◦ 마을공동체의 구성 및 역할 - 마을의 유지·관리, 주민 협약의 이행 등을 위해 질서유지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주민 조직 - 간석자유시장 ‘상인화’와의 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마을밥집’ 등 경로당 식사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마을행사 추진					
주민 공동이용 시설 활용방안 및 활성화 프로그램	◦ 기존 경로당을 철거 후 신축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					
	구 분		주 요 내 용	운영주체		
	활용 및 운영 방안	1층	경로당	경로당 및 주민회의 등으로 이용 가능한 마을관리소로 활용	마을주민	
		2층	커뮤니티센터	◦ 마을배움터, 밥집 등 주민 소통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옥상		텃밭조성	◦ 마을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			
행정지원	◦ 향후 진행의 단계에서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공동체 활동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마을 만들기에 대한 행정의 상담 및 지원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m²)		계	존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간석자유시장주변 주거환경관리사업	12,216	남동구 간석동 224-462 일원	65	56	1	9	폐공 가(2)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제외)
			불허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 준주거지역에서 호용하지 않는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60% 이하)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500% 이하)
		높 이		◦ 관련법령에 따름 (건축법 제60조, 61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적용)

사.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구 분	사업시행자	사업시행방법	시행예정 시기	비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남동구청장	사업시행계획서에 따름	구역지정 고시일로 부터 5년 이내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토지등 소유자	주민 자체적으로 보전·정비·개량 하는 방식	계획 수립 이후	-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구역 전체	형태 및 외관	- 경사도 3/10~6/10 이내의 경사지붕 권장 - 평지붕 조성시 전체 면적의 10% 이상을 옥상녹화 및 옥상정원으로 조성하도록 권장하며, 옥상녹화 조성시 면적의 1/2을 조경면적으로 인정 - 가로에 면한 건축물 외벽에는 가급적 부착물을 설치하지 않고 가로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건축물 후면이나 지붕 상부에 설치
	색채	- 원색적 재료 및 과도한 반사성 재료 사용 지양, 벽면녹화 권장 - 건물색채는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2010」을 준수하도록 권장
	담장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 - 부득이 담장 설치시 최고 높이는 1.2m 이하로 하며,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담장(투시율 80%) 등 친환경 담장으로 설치하도록 권장 - 담장 도색시에는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YR계열 및 Y계열을 사용하고 명도4 채도4 이하로 하도록 권장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구역 전체	옥외 광고물	모든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준수
	대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에는 정원 및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 - 대지 내 주차면 설치 가능시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 - 대지내 공지의 조성은 건축주가 시행하며 조성시 당해 면적은 조경면적에 산입
	환경친화요소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기준 준수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기준 준수

자.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남동구 도시관리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19-157호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 또는 완화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7.

남 동 구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간판개선사업 지역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고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정비시범구역은 「만수동 벽산아파트상가 간판개선사업」의 대상인 벽산아파트상가(호구포로 920 일원)로 지정한다.

제4조(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하며, 설치가 허용되는 광고물의 종류는 벽면이용 간판, 지주이용 간판, 돌출간판, 연립형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 또는 시트지 등 유리창에서 돌출되지 아니하게 부착하는 창문이용 광고물과 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상단이나 주출입구에 건물명을 표시하는 간판, 벽면을 이용한 연립형 간판 등은 광고물의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③ 의료기관, 약국의 표시등, 이미용업소의 싸인볼,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의 벽면이용 간판의 경우에는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을 추가로 설치하여도 무방하다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을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⑤ 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간판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모든 광고물, 게시틀,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 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⑦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수량, 크기, 표시방법은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벽면이용 간판은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층에는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하여 디자인된 베이스 판에 입체형 문자로 표시할 수 있다.

② 간판의 가로 크기는 15m 이내로 해당 업소의 상단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범위 내에서 디자인된 베이스 판은 최대 1m 이내로 하고, 베이스판 위에 표시하는 문자와 도형의 세로 크기와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문자와 도형의 세로크기는 건물층수에 따라 1층은 50cm 이내로 하고, 2층 이상은 아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크기 이내로 한다.

$$(2\text{층 이상 표시문자 세로크기 계산식})$$

$$50\text{cm} + (\text{해당층수}-1) \times 5\text{cm} \text{ 이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가장 높은 층의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입체형간판의 세로크기는 벽면폭 이내로 하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경우 간판의 가로크기는 3m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④ 건물의 지하나 각층의 내부 업소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 벽면에 세로크기 50cm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지주이용간판은 연립형만 허용되며 업소 당 표시면적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지주를 이용한 연립형간판 1면의 총 표시면적은 6㎡ 이내의 판류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선전탑과 유사한 기둥형태(사각기둥, 원기둥, 삼각기둥 등)의 입체형 지주이용간판은 표시할 수 없다.

제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종이, 시트지 등 창문면에서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접착식 광고물로 표시하여야 하며, 문자의 세로 크기는 1층은 30cm 이내로 하고, 2층 이상은 아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크기 이내로 표시한다.

$$(2\text{층 이상 표시문자 세로크기 계산식})$$

$$30\text{cm} + (\text{해당층수}-1) \times 5\text{cm} \text{ 이내}$$

② 제1항에 의한 문자 등의 광고내용은 가로쓰기 형태로 1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건축주 및 건물주 등은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계약서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임을 명시하여 분양계약자 및 세입자가 특정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고시지역 내 모든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협의체와 사전 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적용의 특례) ①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이 고시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옥외광고물 등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을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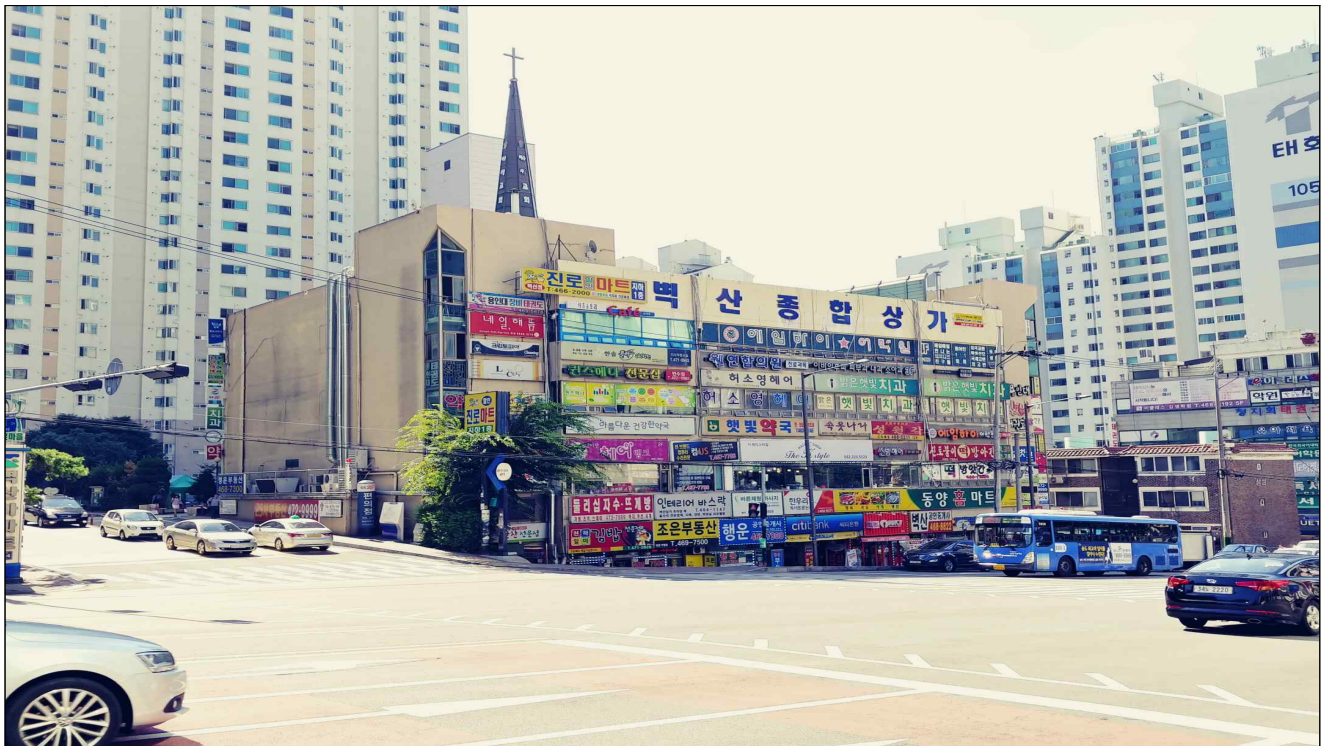
③ **(기타사항)** 정비대상에서 제외되는 옥외광고물은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별표】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 920 일원)



□ 현장사진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19-158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남동구 구월동 1429번지 일원에 신설된 지적기준점(도근점)에 대하여 그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07.

남 동 구 청 장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좌 표	
	X(m)	Y(m)
	붙 임	
기 준 원 점 명	가리좌표, 중부좌표, 세계측지계	
소 재 지	남동구 구월동 1429 일원	
설 치 일 자	2019년 8월 29일	
표 지 재 질	표철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신설(8점), 기존(3점)	

붙 임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표 1부.

지적도근점 성과표

기준점번호	세계좌표		중부좌표		가리좌표		기준점 소재지	비 고
	X	Y	X	Y	X	Y		
1469	538653.00	172910.50	438347.18	172840.23	2113.43	-15349.04	남동구	세계좌표, 가리좌표 신설, 중부좌표 수정
1473	538723.99	172935.15	438418.18	172864.89	2184.45	-15324.49	남동구	세계좌표, 가리좌표 신설
1477	538764.61	172882.62	438458.80	172812.36	2224.99	-15377.07	남동구	세계좌표, 가리좌표 신설
8085	538808.59	172827.55	438502.79	172757.29	2268.89	-15432.20	남동구	신설
8086	538797.22	172821.81	438491.42	172751.55	2257.51	-15437.92	남동구	신설
8087	538748.49	172914.09	438442.68	172843.83	2208.91	-15345.59	남동구	신설
8088	538685.02	172932.02	438379.20	172861.75	2145.47	-15327.57	남동구	신설
8089	538632.92	172867.64	438327.11	172797.37	2093.29	-15391.87	남동구	신설
8090	538599.93	172914.19	438294.12	172843.92	2060.37	-15345.28	남동구	신설
8091	538553.64	172952.22	438247.82	172881.95	2014.13	-15307.19	남동구	신설
8092	538503.78	173017.36	438197.95	172947.08	1964.37	-15241.99	남동구	신설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19-159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만수동 1052번지)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만수동 1052번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5) 공원녹지과(☎453-285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11.08.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5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만수동 1052번지)
 - 명 칭: 남동구청사 담장 허물기사업
3. 사업규모: A=1,225㎡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고시일 ~ 2020.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계	잔여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소유자	주소	
1	만수동	1052	도	2,653.3	1,225	1,225	1,428.3	인천광역시		
소 계				2,653.3	1,225	1,225	1,428.3			

7. 관계 도서: 게재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